

碩 士 學 位 論 文

중국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의 비교



濟州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李 永 申

2006年 8月

중국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의 비교

指導教授 金 富 燦

李 永 申

이 論文을 法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6年 6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李永申의 法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_____ (인)

委 員_____ (인)

委 員_____ (인)

濟州大學校 大學院

2006年 6月

The Comparison of Foreign Capital
Inducement Systems between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Yong-shen Li

(Supervised by professor Boo-Chan Kim)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LAW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목 차

SUMMARY	v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2
1. 연구의 방법	2
2. 연구의 범위	3
제2장 중국 경제특구 외자유치의 의미	4
제1절 중국경제와 외자의 역할의 관계	4
1. 중국의 외자도입현황	4
2. 중국의 외자도입특징	8
3. 중국경제에 대한 역할	10
제2절 경제특구와 외자유치	14
1. 경제특구의 개관	14
2. 중국 경제특구의 성립배경	15
3. 중국 경제특구의 역할	16
4.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현황	21
제3장 중국과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관련 법률과 정책	26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 체계	26
1. 외국인투자법체계와 정책의 개황	26
2. 조세인센티브에 관한 법규	37
3.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41

제2절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관련 특별제도	45
1. 경제관리권의 부여	45
2. 조세의 특혜	45
3. 고용 및 임금제도상의 특혜	48
4. 금융 및 외환관리상의 특혜	48
5.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분쟁해결	49
6. 임시입국비자의 허용과 토지사용의 혜택	50
제4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	52
제1절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52
1.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개황	52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52
3. 외국인투자 보호와 자유화	54
4.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57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제도	64
1. 경제자유구역의 개황	64
2.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제도	69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	72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황	72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제주자치도특별법	77
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	79
제5장 중국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비교	87
1. 서론	87
2. 양자의 비교	88
제6장 결론	100
參 考 文 獻	104

표와 그림 목차

표 목차

〈표2-1〉 외자기업 對中 투자현황	4
〈표2-2〉 주요국별 對中 투자현황(2005)	5
〈표2-3〉 업종별로 외국인 직접투자현황(2003)	6
〈표2-4〉 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현황(2005)	8
〈표2-5〉 심천 외자유치 현황	22
〈표2-6〉 산둥 외자유치 현황	23
〈표2-7〉 하문 국가별외자유치 현황	24
〈표2-8〉 해남 외자유치 현황	24
〈표2-9〉 포둥신구 외자유치 현황	25
〈표3-1〉 외자기업소득세 우대율	38
〈표3-2〉 외국인투자 조세인센티브	40
〈표3-3〉 외국인투자 업종	43
〈표3-4〉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	47
〈표4-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55
〈표4-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56
〈표4-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58
〈표4-4〉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세감면	59
〈표4-5〉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비율	60
〈표4-6〉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66
〈표4-7〉 주요국의 경제자유구역 비교	67
〈표4-8〉 국내법상 자유구역 비교	68
〈표4-9〉 경제자유구역 국세·지방세 우대율	70
〈표4-10〉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77
〈표4-1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세감면 인센티브	81
〈표5-1〉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교	89

〈표5-2〉 중국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비교 93

그림 목차

(그림1) 주해 외자유치 현황 22



SUMMARY

China's absorption of foreign investment is an important content of China's fundamental principle of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and is one of the great practices of building up socialist economy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e Third Session of the Eleventh Central Committee of the Party in 1978 established the basic line of focusing on the central task of economic construction, and made up the great decision of reform and opening up to the outside world. After twenty years of great efforts, the scale of absorbing foreign capital increasingly expanded as well as the level was increasingly upgraded when China's law and managerial system on foreign investment have been gradually perfected. The achievements won the whole world's attention, which effectively promoted the continuous, fast and healthy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China's Special economic zone is the advanced position of opening-up and a special channel for China to introduce foreign capitals and advanced technologies and advance toward international markets. The Chinese government implements special economy policies and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in special economic zones different from that in the hinterland, mainly including: 1) The construction of special economic zones mainly resort to using foreign investments, of which the economic ownership system structure is a syntheses with diverse sectors of the economy under the leadership of the socialist economy including state-owned enterprises, collective enterprises, private enterprises and foreign-invested enterprises; 2) There are more preferential treatments(the rights of economic management, the benefit for taxes, the benefit for employee and salary, the benefit for product-selling and so on) and exit and

entry convenience for foreign investors; 3) The governments of special economic zones have more economic management authorities.

It is Because of its special economy policies and the economic management system the above that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bsorbed so much foreign capital that Shenzhen, the representative of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nnual GDP growth was showed 28% between 1980 and 2004. The higher growth made China's annual GDP increase by 10% over the last 20 years.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basic plan was made on 11 November 2001 and 「the Special Act on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promulgated on January 26, 2002. In order to develop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better,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Creation of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made and becomes effective on July 1, 2006.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was set 10 years later than Pudong, China's the latest established Special Economic Zone, which was built in 1990. It also possesses his particular policies (A wide range of tax benefits are offered as incentives by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The incentives for the tenant companies in the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complex to be built on Jeju Island etc) for absorbing the foreign investment.

Comparing to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it is in preliminary stage and has minor experience. And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is much similar with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especially Pudong among then. According to the above statements, China's Special Economic Zones absorbed the foreign investment successfully, which can give much implications to Jeju Free International City.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중국 경제특구 정책의 실시는 70년대 말 평화와 발전의 모색이라고 하는 세계정치경제의 새로운 국면 하에 폐쇄정책을 탈피하고 세계로 나아가 국제자금, 국제자원, 국제시장 내지 첨단과학기술 및 대규모생산관리 방법을 이용함으로써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였다. 구체적으로 대외개방정책, 특히 경제특구의 설립을 경제발전전략의 중요한 측면의 하나로 활용하고, 경제특구를 자원집중과 시장경제확산의 선진기지로 삼아 중국의 경제·사회 등 총체적 개혁을 이루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제특구의 면적은 5만 제곱킬로미터 미만으로 전체면적의 0.5%에 불과하고, 인구도 약 2,000만명으로 전체의 1.7%에 불과하지만 국민소득은 2.5%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국민소득 증가율은 매년 전국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대외교역 측면에서 보면, 경제 개혁·개방의 전위지역인 접에 걸맞게 수출·입 비중이 전국의 22.3%가 되었다. 이와 함께 외자유치도 17.2%를 차지하고 있다. 즉 이런 지역은 외국인 직접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거래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경제특구의 경우 1차 : 2차 : 3차 산업 비중이 19.7% : 50.9% : 29.5%로서 중국 전체의 54.3% : 22.7% : 23.0%와 비교해보면 경제특구가 이미 공업화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시장 기능 및 사유재산에 기초한 경제활동의 결과,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화가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¹⁾

그 결과로써 특구의 재정수지 및 외환수지는 모두 균형 또는 흑자상태를 실현하였고 사회경제는 지속적인 안정적 고도성장을 하며 선순환의 궤도로 진입함으로써 경제특구는 개혁·개방 정책을 훌륭하게 수행한 기지 및 창구로서의 역할을 발휘하였다.

1) “중국 경제 엿보기”, <http://www.chinainkorea.co.kr/>.

특히 경제특구로서의 대표적인 심천경제특구는 개혁·개방부터 외자유입이 계속 늘어나고 2004년까지 389.11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이를 바탕으로 이전에 궁벽한 벽촌에서 공업도시로 전환하였고, 1인당 GDP는 5천 달러를 넘어섰다. 이것은 중국의 2004년 1인당 GDP 1,268 달러 안팎인 것과 비교해볼 때 얼마나 발전이 빠른지 짐작할 수 있다. 상해 포동신구도 2003년까지 98개 국가와 지역의 1만 이상의 외자기업과 220억 달러 이상의 외국자본 및 전세계 500대 기업 중 180개 이상을 유치하는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다.²⁾

상술한 것처럼 중국 경제특구는 눈부신 경제성장을 통하여 대외적으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심어주었고, 대내적으로는 다른 지역의 경쟁 심리를 유발하고 개발 모델을 전파하는 효과를 낳기도 하는 등 중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중국에서 마지막으로 설립된 포동신구보다 10년 늦게 시작되었지만 중국 경제특구 특히 포동신구와 가장 유사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현재 성장단계에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실정이다. 상술한 것처럼 중국 경제특구는 출범시부터 성공적으로 외자를 유치함으로써 경제특구 자체는 물론 중국 경제전체에 매우 유익한 성과를 거두어왔다. 이러한 중국 경제특구의 경험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지난 20여년간 연평균 GDP 증가율이 10%에 달하는 고속성장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을 검토함으로써 중국 경제특구의 고도 성장원인에 대해 분석하고 중국 경제특구의 외국인 투자정책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발전 방향에 주는 시사점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1. 연구의 방법

본 논문의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와 비교법적 분석을 병행하는 것이다. 첫째, 주로 문헌 연구를 사용하였고, 한국수출입은행,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제주국

2) www.szjt.com(심천시 통계국), www.stats-sh.gov.cn(상해시 통계국).

제자유도시, 중국투자지침, 중국통계국, 각 경제특구 등의 홈페이지에서 조사한 정부통계자료와 보고서 및 각종 학술세미나 자료, 인터넷, 신문 및 잡지 등 각종 언론 자료를 기초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둘째, 비교법적 분석으로 중·한 양국의 외국인투자정책을 비교하고 중국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정책을 비교하였다. 거시적으로는 중·한 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의 구성에 관한 비교 및 관련법률·법규·정책과 투자환경의 비교를 시도하였으며, 미시적으로는 외자유치정책의 세부 규정에 관한 비교를 시도하였다.

2. 연구의 범위

본 논문의 구성은 상술한 방법으로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제도,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 등을 각각 여섯 장으로 나누어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 외자유치의 의미를 두 절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제1절은 중국경제와 외자의 역할의 관계를 논하고 제2절은 경제특구와 외자유치에 관하여 살펴본다.

제3장에서는 중국 전체와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관련 법률과 정책을 두 절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제1절에서는 중국의 외국인 투자 관련법으로 주로 외국인 투자법의 개황과 조세의 인센티브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을 논하고 제2절에서는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관련 특별제도를 논한다.

제4장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를 세 절로 나누어 논하고 있다. 제1절은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규로 주로 외국인투자 관련법규의 개황,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외국인투자 보호와 자유화 그리고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논한다. 제2절과 제3절은 각각 경제자유구역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황 및 외자유치제도 등을 논한다.

제5장은 중국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를 비교·설명한다.

제6장에서는 중국 경제특구의 시사점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외자유치제도의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고자 한다.

제2장 중국 경제특구 외자유치의 의미

제1절 중국경제와 외자의 역할의 관계

1. 중국의 외자도입현황

1992년 110억 1,000만 달러였던 외국인투자는 2001년부터 중국의 WTO 가입 확정과 2008년 하계 올림픽개최 등에 따라 외국인 직접투자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469억불로 전년대비 14.9%로 크게 증가하였고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하였다. 2002년 말까지 실행기준으로 누계 건수는 424,196건, 금액 4,480억불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함으로써 중국은 개도국으로서 세계 최대의 투자유치국으로 부상하였다. 2002년 기준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실제 투자액은 527.4억불로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³⁾ 2003년 들어 사스(SARS)의 파급으로 다소 영향을 받긴 하였으나 여전히 빠른 성장세를 이루어 2003년 외자유치 건수는 41,081(전년 대비 20.2% 증가), 계약액은 1,151억 달러(39.0% 증가), 실행금액은 535억 달러(1.4% 증가)에 달하고 있다. 2004년 외자유치 건수는 43,664(전년 대비 6.3% 증가), 계약액은 1,535억 달러(33.4% 증가), 실행금액은 606억 달러(13.3% 증가)에 달하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외자유치 건수는 44,001건, 계약금액은 1146.56억 달러, 실행금액은 603.2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⁴⁾

<표2-1> 외자기업 對中 투자현황

(단위: 억 달러)

구분	1992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건수	48764	34171	41081	43664	44001
계약금액	581.1	827	1151	1535	-
실행금액	110.1	527.4	535	606	603.25

자료: www.stats.gov.cn (중국국가통계국)

3) 王志樂, 『韓國企業陸續向中國等國轉移』, 中國經濟出版社, 2003, pp.9~13.

4) www.stats.gov.cn(중국국가통계국), 2005.

1) 국가별 투자현황

국가별·지역별 對中 직접투자는 홍콩·마카오로부터의 투자가 압도적으로 많아 對中 투자가 화교자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79년부터 2002년까지 對中 최대 투자국(지역)은 홍콩으로 21만 1,678건, 2,054억 6,300만 달러를 투자하여 전체 중국 투자건수의 49%, 실제투자 금액의 45%를 차지하였다. 1990년대에 들어와 언어와 문화, 상호간 높은 경제적 보완성을 바탕으로 대만의 對中 투자도 급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홍콩, 대만, 싱가포르 등 중국어권 국가들은 건수(件數)기준으로 중국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0%에 육박하고 있는데, 이런 화교기업들은 중국의 광둥, 복건, 절강, 강소 등 주요 연안지역에서 주로 투자하고 있고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와 기존 수출선을 결합하며 중국수출 확대에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05년 홍콩(179.49억 달러)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일본(65.30억 달러), 한국(51.68억 달러), 미국(30.61억 달러), 싱가포르(22.04억 달러), 대만(21.52억 달러) 순이다. 위 국가들의 중국에 대한 투자현황은 다음 <표2-2>와 같다.⁵⁾

<표2-2> 주요국별 對中 투자현황(2005)

(단위: 억 달러)

국가 (지역)	계약건수			실행금액		
	올해	작년	성장률(%)	올해	작년	성장률(%)
홍콩	14831	14719	0.76	179.49	189.98	-5.52
일본	3269	3454	-5.36	65.30	54.51	19.78
한국	6115	5625	8.71	51.68	62.48	-17.28
미국	3741	3925	-4.69	30.61	39.41	-22.32
싱가포르	1217	1279	-4.85	22.04	20.08	9.77
대만	3907	4002	-2.37	21.52	31.17	-30.98

자료: www.fdi.gov.cn(中國投資指南).

2) 업종별 투자현황

5) www.fdi.gov.cn(中國投資指南).

외자기업의 업종별 투자는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저렴한 생산비용을 활용하려는 노동집약적 산업을 위주로 형성되었다. 그러나 1990년대 중반이후 업종 측면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에서 기술·자본집약적 산업 위주로, 규모 측면에서는 중소기업 위주에서 다국적 기업을 비롯한 대기업 위주로 바뀌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중국정부는 산업정책에 의거 국가경제발전에 대하여 유리한 외자를 우선 유치하는 방향으로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도로·항만의 건설 등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기초공업, 첨단산업 등에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유치하고 제조업 분야에서는 에너지, 원자재, 신기술 및 에너지절약형 기술, 외환가득형 산업, 환경오염 방지산업 등에 외국인투자를 중심으로 유치하고 있다.

2002년 중국정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제조업은 건수(件數)기준으로 전체 외국인직접투자의 72.9%, 계약금액으로 71.6%로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다. 제조업 중에서는 전기·통신 25.9%, 섬유20.4%, 화학 19.4%, 기계 13.1%의 순으로 투자가 많다.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계속 향상 추세를 보이고 있다.⁶⁾ 특히 소매 부문에는 외자유치가 많이 상승했고 2004년까지 외국인투자자 전체투자비중의 13%를 차지하였다.



<표2-3> 업종별로 외국인 직접투자현황(2003)

(단위: 억 달러)

업종	건수	성장률%	비중%	계약금액	성장률%	비중%	실행액	성장률%
합계	41081	20.22		1150.7	39.03		535.05	1.44
농·림·축·어업	1116	14.46	2.72	22.76	34.83	1.98	10.01	-2.63
제조업	29281	17.45	71.32	807.47	36.24	70.17	369.36	0.37
서비스업	10179	27.64	24.74	284.79	49.76	24.82	131.36	3.67
기타	499	71.48	1.22	34.92	25.03	3.03	22.5	0.27

자료: www.mofcom.gov.cn(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3) 지역별 투자현황

6) 冼國明, “國際資本流動新趨勢與我國吸收外資政策”, 『2005年中國外商投資報告專論』, www.fdi.gov.cn(中國投資 指南), 2005.11.21.

지역별로 살펴보면 동북지역의 노후 공업기지는 외자를 흡수해 대폭적인 성장을 이루었는데, 동부 지역의 외자유치는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중부지역이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서부는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약해, 각 지역의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다.

2002년 기준 중국의 지역별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현황을 보면 양자강삼각주경제권(上海市, 浙江省, 江蘇省 등)의 외자유치 실행금액이 175.4억 달러로 전체의 33.3%를 차지하여 외자유치(실행액)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그 뒤를 이어 화남경제권(廣東, 福建, 廣西 등)이 155.9억 달러로 전체의 29.6%를 차지하였다.

東北三省(遼寧, 吉林, 黑龍江)의 경우는 2002년 외자유치 실행금액이 40.1억 달러로 전체의 7.6%를 차지하여 91~99년간의 7.3%에 비하여 변화가 거의 없다. 2004년 외국인투자 계약건수는 전년대비 9% 증가했으며, 계약금액은 전년 대비 40% 증가했고, 실제 실행금액은 전년대비 78% 증가했다.

중서부지역에 대한 투자는 그 동안 외국인 직접투자가 동부 연해지역에 집중되어 아직 미미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지만 제10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목표의 하나인 서부 대개발 정책의 실시로 그 비율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⁷⁾ 2004년 동부지역에 외국인투자 계약건수와 계약금액의 증가폭은 전국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부지역은 외자를 흡수해 전면적인 성장을 하고 외국인투자 계약건수와 계약금액 증가폭이 강세로 보이면서 전년대비 각각 19%와 3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부지역의 계약금액 증가폭은 전국 평균증가 폭보다 26% 증가했지만 실제 실행금액 증가폭은 전국에 비해 11% 낮은 편이었다.⁸⁾

4) 형태별 투자현황

형태별로는 外商獨資經營企業(Exclusively foreign-owned enterprises)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다. 그 동안의 중국투자는 합자형태가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外商獨資經營企業의 형태가 늘어났다. 2000년부터 外商獨資經營企業의 비중이 中外合資經營企業(Sino-foreign joint ventures)의 비중을 넘어섰으며, 이러한 현상은 계속 심화되어 2002년에는 합자투자 비중은 28.4%에 불과한 반면, 外商獨資經營企業 비중이 무려 60%에 달하였다. 2005년 6월까지 계약금액은 861.91억 달러, 이중

7) 장진민, “중국진출 한국기업의 투자현황과 특징분석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산동성 진출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4, pp.19~20.

8) KOTRA 홈페이지(www.kotra.or.kr).

에 中外合資經營企業은 135.67억 달러, 中外合作經營企業(Cooperative businesses)은 41.41억 달러, 外商獨資經營企業은 671.31억 달러이다. 실행금액은 285.63억 달러, 이중에 中外合資經營企業은 66.27억 달러, 中外合作經營企業은 7.92억 달러, 外商獨資經營企業은 209.81억 달러이다.

〈표2-4〉 형태별 외국인 직접투자현황(2005)

(단위: 억 달러)

구 분	계약건수			실행금액		
	올해	작년	성장률(%)	올해	작년	성장률(%)
누 계	44001	43664	0.77	638.05	640.72	-0.42
(1) 직접투자	44001	43664	0.77	603.25	606.3	-0.5
합자경영기업	10480	11570	-9.42	146.14	163.86	-10.81
합작경영기업	1166	1343	-13.18	18.31	31.12	-41.15
독자기업	32308	30708	5.21	429.61	402.22	6.81
외상투자 주식기업	47	43	9.3	9.18	7.77	18.21
합작개발	0	0	0	0	1.09	-100
기 타	0	0	0	0	0.24	-100
(2) 기타투자	0	0	0	34.8	34.43	1.1
주식발행	0	0	0	1.6	6.95	-76.98
국제입차	0	0	0	1.08	0.38	185.71
보상무역	0	0	0	0.16	0.05	255.85
가공장비	0	0	0	31.96	27.05	18.15

자료: www.fdi.gov.cn(中國投資指南).

2. 중국의 외자도입의 특징

1) 외국인직접투자의 강조

중국 외자도입 정책은 외국인직접투자와 간접투자에 대하여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외자에 대하여 많은 우대정책을 실시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지방정부에 대해서는 스스로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방정부는 ‘우대정책경쟁’을 통하여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한다.

반대로 중국정부는 외국인간접투자에 대하여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정부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해 증권시장을 많이 개방하지 않았고 국내증권

시장을 이용하여 외자를 유치하는 것도 규모가 작은 B주식(B주식은 인민폐로 액면가를 표시하고 외화로 매매를 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주식이다.)과 어떤 여건⁹⁾에 따른 A주식(A주식은 중국에서 발행하고 국내기구·조직·개인(대만, 홍콩, 마카오의 투자자제외)은 인민폐로 매매·거래하는 주식이다.) 시장에서 진행하였다. 중국정부가 외국인간접투자자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취하는 또 다른 예는 중국의 국제상업차관정책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중국에서 국제상업차관의 실행자는 중앙정부만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허가가 없으면 지방정부나 기업은 국외차관을 사용할 권한이 없다. 개혁·개방 이래 중앙정부는 여러 규정을 발표하여 국제상업차관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 우대와 제한의 병존

중국외자정책은 전형적인 우대와 제한이 병존하는 이중성을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종 우대정책을 제정·실시하여 외자를 유치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외자의 진입과 외자활동에 대해 여러 가지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외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많은 우대정책을 제정·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세수우대, 토지사용우대, 수출입경영특권 등이다. 이런 정책은 중앙정부에서만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 전국적인 정책이다. ‘우대정책경쟁’으로 인해 각 지방은 중앙정부보다 더욱 우대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호남성(湖南省)은 미발달지역의 에너지와 광산개발항목에 투자하는 경우에 6년간 상업소득세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 소득세 이외에 각 지방은 무수한 공상세(工商稅)와 개인소득에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¹⁰⁾

중국은 외자에 대해 각종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동시에 국가경제안전을 고려하고 많은 제한조치를 취하고 있다. (1) 시장진입제한; 외자 진입의 업종을 제한한다. (2) 지분제한; 중외합자기업에서의 외자지분비율을 제한한다.¹¹⁾

3) 지역적 차이

9) 자세한 것은 「유자격외국기관투자자의국내증권투자에대한잠정조치(合格境外機構投資者境內證券投資管理暫行辦法, 2002.11.5)」, 「외국인투자에대한상장회사국유주와법인주의양도문제에관한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 2002.11.1)」 등 법규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10) 金芳, 『外國直接投資激勵政策』, 高等教育出版社·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9, p.207.

11) 자세한 것은 중국의 외자정책부문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외자를 이용할 때부터 중국의 외자정책은 줄곧 지역경향성 정책을 실시하였고, 시기와 지역에 따라 외자정책의 차이가 있었다. 최초 외자우대정책은 경제특구와 연해개방도시에 치중하였고 이 지역에 비해 많은 우대정책을 영위하였다. 지난 90년대 초 외자정책은 각성 省都, 양자강삼각주 및 연강지역, 서남·서북과 동부지역의 15개 연변, 연강도시로 확장되었다. 21세기 초 ‘서부대개발’의 전략실시로 인해 중서부지역 특히 서부 12개 성·시·자치구는 ‘외자우대정책경쟁’중 우세를 차지하였다.

4) 업종별차이

중국외자정책의 산업분야에 대한 접근은 지역경향정책과 유사하고 매우 명확하다. 1986년 10월 국무원이 공포한 「외국인 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품수출기업과 첨단기술기업에 대하여 특별우대를 부여하였다. 같은 해, 「중국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7기 5개년 계획」에서는 에너지·통신·원자재 특히 전력·항만·석유 등 측면의 수립, 기계전자업종의 기술개발 등 분야를 외자이용의 중심으로 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에너지개발, 10개성의 내륙석유개발, 탄광개발, 핵·열에너지개발 (2) 건축재료공업, 유리제조공업 (3) 화학공업무독농약, 유산, 각종 복합비료 (4) 기계제조공업자동화 제어시스템, 해상석유채굴설비제조, 중형트럭, 중형기계제조 등이다.

3. 중국경제에 대한 역할

상무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2003년 한해 대체적으로 좋은 경영 성과를 보이고 있으며 산업 증가치, 수출액, 세수, 은행외환결재흑자액 등 주요 경제 지표에서 전국평균보다 높은 성장 폭을 나타냈다. 또한 국민경제총량, 특히 국민경제성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높아지는 등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고속성장을 촉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2003년 현재 등록된 약 23만 개의 외국인 투자기업(산업기업은 약16만 개)의 산업생산액은11,174억 위안에 달하며 동기대비 20% 성장, 전국산업 증가치 폭(17.00%)보다 3% 높아 전국산업 증가치(41,045억 위안)의 27.22%를 차지하였다.

이는 작년보다 1.5% 증가한 수치이다. 수출액은 2403.41억 달러로 동기대비 41.43% 증가하였다. 수출 증가액은 704.04억 달러로 전국수출증가액의 62%를 차지한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은행외환순이익은 654.14억 달러로 지난해보다 38.80% 증가하였고 전국 은행외환 순이익의 53.74%를 차지한다. 이는 같은 기간 국가 외환 보유고 순증가치의 55.99%에 달하는 것이다. 외국인 투자 기업이 납부하는 세금은 4,278억 위안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2.81% 증가하여 전국세수총액의 20.86%를 차지하였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대외의존도는 다른 기업에 비하여 매우 높아 수출액이 산업생산액의 45.85%를 차지, 다른 유형의 기업보다 29.16%가 높았다.¹²⁾

1) 중국경제의 중요 부분

첫째, 1980-1999년 동안 중국의 GDP가 연평균 9.7%의 속도로 증가하였다. 그중에 대략 2.7%가 직·간접적인 외자유치에 따른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연구 성과에서는 중국이 90년대에 10.1% 평균 경제 증가율 중에 외자유치에 따른 효과는 3%를 보였다.¹³⁾

둘째, 중국 국내 총자본형성(GDCF)으로 계산하면 1983년 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 국내 총자본 가운데 단지 0.9%를 차지하였다. 1993년은 12.1%였고 1994년은 15.11%의 최고수준에 달하였다. 2002년에는 10.1%였고 1993년부터 2002년까지 FDI가 중국의 전체고정자산 투자에 차지하는 비율은 연평균 12.5%이었다.

셋째, 외자기업의 공업 생산액이 중국 공업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의 9.2%에서 2003년의 33.4%로 증가하였다. 이 밖에 외자기업의 공업 증가치가 중국 공업 증가치를 차지하는 비율은 1994년의 11.0%에서 2002년의 25.7%로 증가하였다.

넷째, 외자기업은 1993년에 수출총액이 917.4 억 달러였고 2002년에 1699.4억 달러이었다. 외자기업 수출액이 중국 수출총액을 차지하는 비율은 1993년의 27.5%에서 2002년에는 52.2%로 증가하였다.

다섯째, 2002년 외국인 투자자의 중국의 은행에 있는 외화의 매도결제 흑자는 471.3억 달러였다. 이는 중국의 은행 외화 매도결제 흑자의 72.7%에 달하였으며, 같은 시기 중국 외화보유고 증가치의 63.7% 이었다. 과거의 몇 년 동안 외자기업의

12) 『中國經濟時報』, “如何看待外資對中國經濟的影響”, 2004.10.21일자.

13) 韓彩珍, 『外商投資環境與法律環境』, 中國輕工業出版社, 2000, pp.14~15.

외화흑자가 결코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외자기업과 국내기업 수출입의 상품을 비교해 볼 때 외자기업의 자본재의 수입이 국내보다 10~15% 평균 높았다. 즉, 외자기업의 수입은 원자재를 위주로 하는 중간재가 아니라 자본재이다.

여섯째, 1993년에 외국인투자기업이 납부한 세수는 226.6억 위안이고 중국 세수 총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5.7%이었다. 2002년까지 외국인투자기업이 납부한 세수는 348억 위안이고 중국 세수 총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이미 21%에 달하였다. 2004년, 외국인투자기업이 납부한 세수는 5,300억 위안이고 중국 세수 총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0%이었다. 2005년 1~6월에 외국인투자기업은 납부한 세수는 3,000억 위안이고 중국 세수 총액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20%이었다.¹⁴⁾

일곱째, 외자는 고용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준다. 직접적인 영향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직접적인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영향으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한 부문의 취업기회를 창출하는 것이다. 1985년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한 자가 6.06만 명였고 중국 도시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0.05%이었다. 1996년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한 자가 527.04만 명에 달하였고 중국 도시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3.55%이었다.¹⁵⁾ 2002년 말에 외국인투자기업에 취업한 자가 2,350만 명을 넘었고 중국 도시근로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대략 11%이었다.

여덟째, 외자유치를 통하여 중국경제에 첨단기술과 선진기업 관리방법을 가져왔다. 지난 20년 동안 외자기업은 많은 첨단기술과 설비를 도입하였다. 이것은 중국이 외국과의 격차를 줄이고 많은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자기업의 평균 규모가 국내기업보다 43%큰 것으로 밝혀졌다. 더욱 많은 자본을 이용하는 것 이외에도 외자기업은 국내기업보다 자본생산성이 더욱 높고 노동생산성도 국내기업보다 88% 높았다. 국내 희소한 자원을 이용하는 측면에서도 외자기업의 효율이 더욱 높았다. 외자기업은 국내기업과 자원을 다투지 않으며 오히려 외자기업의 발전은 중국 경제구조의 조절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지속가능 발전전략에도 유리하다.

2) 중국경제구조 변화

14) 『國際商報』, “外商投資對中國經濟的貢獻提高”, 2005.9.29일자.

15) 韓彩珍, 前掲書, pp.19~20.

첫째, 다국적 기업의 진출이 관련기업의 발전을 가져왔다. 1개의 다국적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 60%의 관련업체들이 따라 들어오게 됨에 따라 국산화와 직원의 현지화가 촉진되는 효과가 있다.

둘째, 외자기업은 중국 시장경쟁을 추진하였고 그 첨단기술과 양호한 실적은 중국 국내기업에 압력을 주었으며 중국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였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높였다.

셋째, 현재 중국 경제에 있어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제도개혁이고, 이것은 내부의 힘만으로 부족하며 반드시 외자 도입을 통한 외부의 개혁 원동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 수 있다. 상무부연구원 고급연구원 마우(馬宇)의 관점에 따라 중국 국내 산업을 살펴보면 외자도입이 잘 이루어진 산업일수록 제도와 관리가 좋고 외자에 대한 제한과 관리가 엄격한 산업일수록 문제가 많다.

넷째, 외국인투자자와 국유기업이 만남으로써 정부와 기업간의 유착 고리를 끊고 많은 행정 간섭으로부터 벗어나는 등, 노동, 인사, 수출입경영권과 투자자율권 등의 실현되었다고 밝혔다.

다섯째, 내자기업과 비교할 때 일반적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은 직원의 소득이 높을 뿐만 아니라 직원 사이의 소득격차도 심하다. 이러한 소득 재분배 메커니즘은 중국외자기업 직원의 소득수준을 높였으며 또한 양에 상관하지 않고 분배에만 치우친 비효율적 체제를 타파하고 자금, 기술, 관리, 지식을 소득분배 범위에 포함시키는 등 전체적인 자원배치효율의 제고를 가져왔다. 또한 외자기업은 시장공급을 형성하고 부족한 시장구조를 빠르게 바꿈으로써 시장에 경쟁과 자극을 가져와 시장진입을 확대하고 국내시장 분할을 타파하여 아직 존재하는 정부주도형 자원배치 방식을 시장주도형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등 낡은 경제체제를 버리고 새로운 체제 확립을 가속화 하고 있다.

여섯째, 외자를 통한 주식투자와 합병은 국유기업이 성공적으로 투자비용을 줄이게 하거나 기업을 경쟁영역에서 퇴출시킬 뿐만 아니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우량 자산투입으로 기업의 자산능력이 향상된다고 본다. 또한 무형자산과 유형자산간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해외브랜드, 판매경로를 이용하여 방치된 국유자산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외국인 투자 기업의 중국시장진출은 국내시장의 독과점형태를 경쟁형으로 전환하게 되고 이러한 경쟁 시장 구조에서 몇몇 기업은 위축되고 생존과 발전능력을 상실하게 되는가 하면 몇몇 기업들은 확장을 계속하여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킨다. 이렇듯 기업간의 차이가 커짐에 따라 기업간의 구조조정이 나

타나게 된다. 결국에는 각 산업의 생산 집중도가 크게 향상된다. 또 외국기업과 공동출자를 통하여 직접 기업구조조정을 실현할 수 있고 기업의 기술과 관리의 선진화를 가속화 할 수 있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진출은 새로운 산업의 개발과 발전을 가져와 국내시장의 공백을 보완하고 산업의 구조조정과 선진화를 더욱 가속화시킨다.¹⁶⁾

제2절 경제특구와 외자유치

1. 경제특구의 개관

경제특구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였는데, 중국이 개방전략으로 채택한 이후 국제적 용어로 정착되었다. 경제특구란 국내의 다른 지역과 차별되는 제도를 특정지역에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들이 선호하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정된 특별경제지역을 말한다.¹⁷⁾

중국 경제특구란 중국이 국가주권을 행사하는 전제 하에, 대외무역을 발전시키고, 대외경제협력과 기술교류를 전개하며, 외자와 기술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떤 지역 내 또한 어떤 지역의 일정한 구역을 나누어서, 외국회사와 개인 및 화교와 홍콩·마카오 중국인 동포의 투자를 허가하고 특수한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많은 법규가 변화했기 때문에 중국 경제특구의 특수체제는 약화된다. 이것은 중국 경제특구가 “특수한 경제정책과 경제관리체제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 또는 구역”의 기본 개념과 부합하지 않는다. 그래서 경제특구의 새로운 임무가 있는데, 이 임무는 바로 세계 경제특구 즉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는 것이다.¹⁸⁾

전세계적으로 보면 자유무역지대는 비 WTO체제 하의 자유무역지대와 WTO체

16) 『中國經濟時報』, 전계뉴스.

17) 박병원,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 『경제특구와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경제연구학회 산업연구원, 2002, p.55; 이강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국제경영대학원, 2003, p.17.

18) 蘇東斌, “中國經濟特區的新鮮使命: 從‘中國’經濟特區走向‘世界’經濟特區”, 『特區經濟』 12, 2001, p.7.

제 하의 자유무역지대 두 개의 모델이 있다. 중국 경제특구는 점차 WTO체제 하의 자유무역지대로 발전하였다.¹⁹⁾ WTO의 기본원칙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등 특별경제구역에 우대정책을 실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런 경우에 중국 경제특구는 원래의 우대정책을 유지하면서 더욱 우대하는 정책이 실시될 수 있고 외자를 더 잘 유치할 수 있다.

2. 중국 경제특구의 성립배경

중국 경제특구 설치구상은 이미 1978년부터 시작되었다. 그해 3월 신헌법에서 화교들의 권익보호를 규정하고, 7월에는 외자도입을 공포하는 등 대외개방 노선을 본격화하는 한편, 광둥성 보안현(保安縣)을 부식품 및 가공수출기지 내지 관광지구로 개발할 계획을 공포하고 이를 위한 외자도입이 시작되었다.²⁰⁾ 1979년 2월 국무원의 승인 하에 광둥성 보안현 심천진이던 지역을 광둥성정부 직속의 성·직할시로 승격시키는 한편 심천시 서남단의 사구(蛇口)지역에 공업단지를 설립할 것을 결정했다.²¹⁾ 그해 5월에는 광둥성 인민정부가 「심천·주해·산두에 수출특구를 시험적으로 실시하는 것에 관한 초보적 구상」(關於試辦深圳, 珠海, 汕頭出口特區的初步設想, 1978.5.5)을 제출하고, 7월에는 黨中央國務院에서 광둥·복건 양성에 특별정책을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광둥·복건 양성에의 재정·외화관리에 일정의 자주권을 부여한다. 둘째, 물자 부분은 국가 계획지도하에 시장에 의해서 조절한다. 셋째, 계획·물가·노동자·임금·대외경제활동 등에 대해 지방으로 권한을 확대한다. 넷째, 심천과 주해를 먼저 수출특구로 하고, 이 두 도시의 경험을 종합해서 산두·하문에도 특구의 설치를 고려한다.²²⁾

심천경제특구의 사구공업구의 건설 개시는 국무원 결정 직후에 이루어졌다. 그 후 중앙 요인, 학자 등의 현지시찰, 토론회가 계속되면서 같은 해 12월에는 광둥성(廣東省) 제5기 전인대 제2차 회의에서 「광둥성경제특구조례」(廣東省經濟特區條例, 1980.8.26)가 처음으로 심의되었고, 이는 1980년 4월의 광둥성 인대 상무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수정을 거쳐 1980년 8월 26일 제5기 상무위원회 제15차 회의에서

19) 周成新, “關與我國加入WTO後經濟特區存在和發展的法律思考”, 『法商研究』 2, 2003, p.43.

20) 김용석,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른 경제특구의 의의와 그 발전”,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대학원, 1994, p.20.

21) 백권호, 『중국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中華經濟研究院, 1985, pp.2~37 참조.

22)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법문사, 1993, p.8.

최종 결정되었다. 동시에 심천(深圳), 주해(珠海), 산두(汕頭)에 ‘경제특구’가 설치되었고, 같은 해 10월 7일은 복건성(福建省) 하문(廈門) 경제특구가 국무원에서 승인되었다.

경제특구는 처음에 ‘수출특구’로 불렸는데, 국무원 부총리 곡목(谷牧)이 주최한 광둥·복건 양성 회의(1980년 3월)에서 ‘경제특구’로 그 이름이 바뀌었고, 같은 해 5월 16일의 국무원 문서²³⁾에서 처음으로 정식 명칭이 ‘경제특구’로 지정되었다.

중국 경제특구는 등소평 대외개방정책의 소산이며 그것은 중국을 세계의 무대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었다. 1979년에 처음 성립된 경제특구는 광둥성의 심천, 주해, 산두와 복건성의 하문 등 4개가 있었고 1988년에 해남도의 해남(海南)경제특구가 추가로 설치되어 모두 다섯 개가 되었다.²⁴⁾ 또한 1984년에 개방도시로 지정된 상해의 포동 지역도 1990년에 포동(浦東) ‘경제특구’로 지정되어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경제특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3. 중국 경제특구의 역할

중국 경제발전의 원인을 설명하는 요인 중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경제특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한 정책과 그에 따른 편익이었다. 경제특구는 초기에는 일반적으로 주로 수입의 산업과 수출지향 산업에 대한 지원을 내포하였다. 중국의 경우 대약진 운동이 한창 진행될 때 중공업을 발전시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하고 모든 물품의 자급자족을 통하여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전략을 내세웠지만 그 결과는 참담한 경제 실패로 나타났다. 이후 중국은 개혁·개방의 일환으로 경제특구를 설립하고 자본주의의 실험을 조심스럽게 시도하였다. 경제특구는 계획경제가 안고 있는 많은 모순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시범지역의 역할과 외국과의 접촉을 시도하는 창구의 역할을 수행하였기에 초기 중국 경제특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학습하는 실험실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특구 밖에 있는 중국 국내 기업의 경우 외국기업에 대한 정보나 기술, 판로, 운영방식 등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경제특구에 진출한 자국 및 외국기업으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경제특구에 진출하지 못한 국내 기업들도 자극을 받아 경제특구 내의

23) 「‘광둥, 복건 양성 회의기요’에 관한 회시(關與‘廣東, 福建兩省會議紀要’的批示)」, 1980.5.16.

24)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실험대이면서, 동시에 대외개방의 창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 경제특구가 창설된 것은 등소평의 전략정책에 다른 것으로써 개혁·개방과 현대화건설의 도입을 의미한다.

기업과 기술양도 및 공동개발과 같은 협력 관계를 이루어 발전의 틀을 갖게 되었다. 이미 경제특구에 진출한 기업들은 외국기업과의 제휴, 외자도입, 외국기술 획득 등을 통하여 성장·발전하였고, 그 결과 대외수출의 비약적 성장을 가져왔다. 경제특구의 성공적인 운용은 중국의 경제구조도 변화시켜 생산기술 이외에도 교육, R&D, 관광 등 서비스 업종에까지 기술양도 효과가 파급되어 자연스럽게 선진 자본주의의 경제를 종합적으로 학습하게 되었다.²⁵⁾

중국 경제특구의 대명사로 알려진 심천은 총면적 327.5km²로 주해 및 산두보다 훨씬 큰 편이었으나 홍콩 면적의 1/3, 싱가포르 면적의 1/2 크기이다. 이런 작은 면적에도 불구하고 경제부분에서 1997년도에 1인당 GDP가 4000달러를 넘어섰고 수출은 약 285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경제특구지정 이전 심천은 주민의 80%가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였고 지역의 총생산량이 광둥성 총 GDP의 1% 미만이었다. 지역의 전기 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자본 시설은 매우 열악하였고 숙련 노동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런 심천의 열악한 초기 조건을 중국 정부는 상당 부분 국가지원으로 해결하였다. 심천이 개발될 때 중국 정부는 48%의 고정 자본을 자체적으로 투자하였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해외자본의 유치와 경제특구 내에서 조달되는 자체기금, 채무 등으로 충당하였다. 그 결과 정부가 세출을 위해 예산을 책정하는 비율은 급격히 감소하였다. 심천 경제특구가 성공적으로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었던 비결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 시키고 외국자본 유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였기 때문이다. 1979년 중국정부는 기업소득세를 30%에서 15%로 인하하였다. 당시 싱가포르와 홍콩의 기업소득세가 각각 35%와 18.5%에 달한 것을 감안한다면 실로 파격적인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외국 기업이 토지를 사용할 때에도 상당한 특혜를 제공하였으며, 아울러 저렴한 노동력을 공급하여 저비용에서 생산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생산과 소유방식에서도 임가공, 단순조립, 보상무역, 공동생산, 합작투자를 계속하게 되었다. 이러한 심천 경제특구의 사업 환경의 개선은 많은 홍콩 기업을 유인하였고, 장기적으로 막대한 화교 자본이 도입되고 경제는 급속히 성장하였다.²⁶⁾

중국 경제특구의 역할을 그 동안의 운영 분석을 통하여 간략히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25) 정길용,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3, p.21.

26) 정길용, 전계논문, p.22.

1) 중국 경제 발전의 견인차

심천경제특구, 주해경제특구, 산둥경제특구, 하문경제특구의 성과에 대해 1979~1992년의 지표를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이 45배 증가되었고, 공업총생산량은 51.4배 증가되었으며, 수출은 88배 증가되었다. 그리고 정부재정수입은 40.6배가 증가되었고, 도시민소득은 7배 증가되었다. 그리고 해남경제특구의 성과에 대해 1987~1992년의 지표를 통하여 비교해보면, 국내총생산이 1.54배 증가되었고, 공업총생산량은 2.9배 증가되었으며, 수출은 7.8배 증가되었고, 정부재정수입은 5배가 증가되었다. 이런 경제성과를 보이면서 중국 경제특구는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였다.²⁷⁾

2) 외자유치, 첨단 제조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의 도입과 전파

5개 경제특구에 수용된 외국인 직접투자는 1992년 말까지 15,300건으로 전체 외국인 투자건수의 1/6였고, 투자계약액은 225억 달러로 외국인 투자총액의 25%를 차지하고 있다.²⁸⁾ 경제특구는 외자를 유치할 때 첨단기술을 함께 도입하였다. 경제특구의 설립과정에서 외자이용과 외국의 첨단기술 도입은 물론 中外合資經營企業, 中外合作經營企業과 外商獨資經營企業을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형식이 공존하는 소유제 구조의 발전도 필요하였다.

개혁 착수 당시 중국의 미비한 투자환경 및 체제의 불안정성 등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외자유치 전망은 불투명했고 첨단 제조기술이나 과학적 관리방법을 곧바로 낙후된 중국 산업에 적용하기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더욱이 해외의 잠재적 투자자들은 대체로 홍콩, 대만의 경제인과 해외 화교 자본가들이었으며, 이들은 중국의 낙후된 경제 구조와 경직된 체제에 대해 회의적인 판단을 하고 있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다른 지역보다 정비된 투자환경과 수출에 유리한 입지제공을 통하여 이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제특구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27) 소작기著·진정미 譯: 『중국경제의 야망』, 매일경제신문사, 1996, p.359 참조; 黃泰和, “中國經濟特區的建設和發展展望”, 『經濟理論與經濟管理』 제1기, 1994, p.13.

28) 중국 경제특구는 투자환경이 좋고 정책적 특혜가 제공되었기 때문에 대량의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성공적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 당시 낙후된 산업기술 및 경직된 계획경제체제에 있어서 사회 간접자본 미비와 시장분할 현상 및 지역 보호주의는 첨단 제조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의 효율적 전파를 저해하는 요인이었다. 따라서 시장기구가 작동하는 경제특구와 각 지역의 연결을 통한 기술 전파는 중국의 상황에서 전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적 시장을 통합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모색되었다. 즉 자유로운 경제체제를 갖추고 첨단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을 흡수·소화하여 중국대륙의 여타지역으로 전파해 줄 수 있는 대외적·대내적 창구로서의 경제특구가 필요했던 것이다.²⁹⁾

3) 지역발전 거점 및 체제완충지역

경제개혁과정에서 중국은 방대한 국토와 인구, 지역의 경제력 격차, 낙후된 산업기술 등 중국이 처한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일부 지역이 먼저 부유해진 다음에 그 발전된 경제력을 이용하여 다른 지역을 발전시키는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었다.³⁰⁾ 즉, 동부해안지역의 경제발전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고 이런 지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중서부 내륙지방의 발전을 추구한다는 차원에서 이미 공업기반이 마련되어 있던 대련(大連)·천진(天津)·상해(上海) 지역에 이어 개혁초기에 복건성과 광둥성의 산업기반을 발전시키도록 했던 것이다.

한편 ‘일국양제(一國兩制)’ 정책을 천명했던 중국은 철저한 시장논리에 의해 움직이는 홍콩 및 대만의 경제인들에게 안정감과 투자심리를 제공하고 개혁이 진행되는 동안 판이한 체제의 접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마찰과 충격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중간지대를 설정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경제특구의 위치설정에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었다.³¹⁾

4) 도시행정과 투자환경의 개선

중국정부는 경제특구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시행정을 자본주의

29) 정길용, 전계논문, p.22.

30) 이와 같은 방침은 1992년 1월 18일~2월 21일에 걸친 등소평이 심천 등 중국 남부지방을 순시하면서 발표한 주요 담화내용에 잘 나타나고 있다. 담화내용의 요약은 張書義 編: 『中國改革開放大辭典』, 廈門大學出版社, 1994, pp.13~17 참조.

31) 오승렬,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1호(통권 제23호), 평화문제연구소, 1995, p.78.

적인 체제로 개혁하였고, 외국인의 기업 활동과 주거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투자환경개선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리하여 경제특구의 교통·에너지·전기통신·호텔 등의 수준이 상당히 개선되었고 도시행정시설도 점차 완비되어 생활의 질도 향상되고 있다.³²⁾

5) 개혁·개방 정책의 시범지역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일단 지역적 혹은 단계적 실험과정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확산되는 특징을 보여 왔다. 이와 같은 실용적인 접근 방법에 의해 중국의 개혁정책은 심각한 사회적 저항 없이 자연스러운 현실적 필요에 의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의 시장 지향적 개혁과정에서 경제특구는 지방재정과 기업경영에 관한 의사결정권의 분권화, 시장가격에 의한 상품 및 생산요소의 공급과 수요결정, 외환 및 대외경제 관계의 자율적 관리, 인센티브 시스템의 확립, 주식제도를 포함한 소유권의 다양화 등 주요한 체제변화 정책의 시범지역의 역할을 담당해 왔다. 경제특구에서의 실험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 정책은 곧이어 전국적 범위의 정책으로 채택되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새로운 정책의 채택에 의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러한 개혁정책의 시범지역의 역할은 경제특구건설의 주요목적중의 하나였던 것이다.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볼 때, 중국 경제특구는 외자유치와 수출촉진을 위한 창구로서의 역할 이외에 제조기술 및 관리방법의 흡수 및 전파, 개혁정책의 실험 및 개선, 중서부 지역에 대한 경제개발의 파급효과 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 종합적 '특별구역'이었다. 이는 일반적으로 외자유치를 위한 편의 제공이나 세제 간소화 및 기반시설 제공을 통한 수출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유무역지대나 자유무역항 혹은 보세가공무역등과는 그 역할과 목적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중국 경제에 있어서 경제특구의 외자유치규모 및 수출입 비중이 그 다지 크지 않으며, 이는 바로 위에 설명한 중국 경제특구의 종합적인 성격을 반영하고 있다.³³⁾

6) 현대기업의 설립

32) 소작기著·진정미 譯, 前掲書, p.360 참조.

33) 오승렬, 전계논문, pp.78~79.

중국이 사회주의국가이기 때문에 계획경제체제에 입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천경제특구는 시장경제원칙에 입각하여 증권시장, 선물시장, 노동시장을 건립함으로써 시장조절을 위주로 하는 시장경제체제를 갖추었고, 근로자복지와 사회보장 제도를 단행하였기 때문에 현대화기업이 대대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리하여 이러한 개혁적인 조치는 전국적인 개혁을 위한 시금석으로써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하였다.³⁴⁾

7) 내륙지역에 대한 방사기능 발휘

전국 각 성이나 성급의 대도시, 대기업이나 중앙의 각 부문이 경제특구에 설치한 대표기업이나 기업은 거의 1만개에 달한다. 이러한 사실은 특구가 내륙지역의 투자대상 지역임을 의미하기도 한다. 경제특구는 이처럼 폭넓은 내륙과의 연관으로 자금·물자·노동력·시장 등 방면에서 내륙지방의 강력한 협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내륙지역이 특구를 자신의 대외경제 교류에 대한 창구 또는 교량으로 이용하여 국제시장 정보를 입수하고 수출을 견인하며 외국인 투자를 끌어들이는 등 특구의 개혁·개방에 대한 선진적 경험을 학습하여 자신의 개혁·개방 및 경제발전을 촉진시키는 데 이용하였다. 경제특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혁·개방 정책은 14개 연해도시, 13개 변경도시, 5개 강변(沿江)도시 및 18개 내륙省都로 잇달아 확대되었고 20여개 경제기술개발구가 연이어 탄생하였으며 북에서 남에 이르는 연해의 200여개 시(현)가 경제개방구로 개방되었다.³⁵⁾

4.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현황

1) 심천경제특구의 외자유치현황

2003년 이용외자항목계약은 2,573개이고 실행금액은 50.42억 달러이며, 이중에 외국인 직접투자 금액이 21.30억 달러에 달하였다. 2004년에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 금액이 41.21억 달러이고 실행금액은 23.50억 달러이다. 2005년 외자유치가 계속적

34) 소작기著·진정미 譯, 前掲書, p.359 참조.

35) 이상직·박기성,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2003, p.52.

으로 상승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금액은 52.51억 달러이고 이 중에 실행금액은 29.69억 달러에 달하였다. 외국인 직접투자항목에서 총 투자액 1,000만 달러 이상의 항목은 888개이고 3,000만 달러 이상의 항목은 151개이고 1억 달러 이상의 항목은 26개이다. 86개 다국적기업은 심천에 투자하고 투자항목은 138개에 달하였다.³⁶⁾

〈표2-5〉 심천 외자유치 현황

(단위: 억 달러)

구 분	계약금액	성장률%	실행금액	성장률%
2003년	32.05	-	21.30	-
2004년	41.21	28.6	23.50	10.4
2005년	52.51	27.4	29.69	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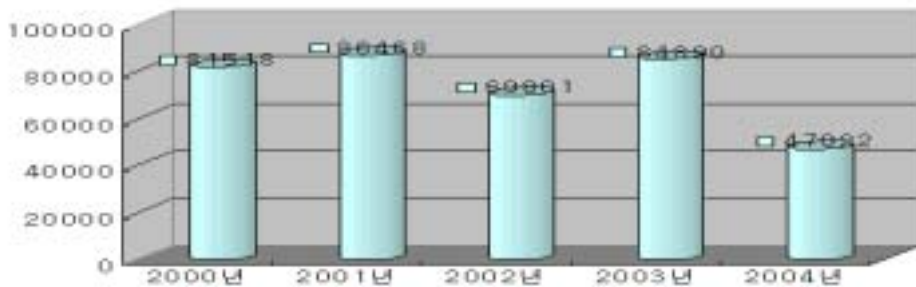
자료: www.szjt.com(심천시 통계국).

2) 주해경제특구 외자유치현황

2004년 이용외자항목계약은 472개이고 2003년과 보다 11.6%를 증가했다.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금액은 17.66억 달러이고 실행금액은 4.70억 달러이다.³⁷⁾ 2005년 외자도입 계약은 588건에 계약금액은 22.70억 달러이고 이 중 실행금액은 6억 달러에 달하였다.

(그림1) 주해 외자유치 현황

(단위: 만 달러)



자료: www.stats-zh.gov.cn(주해시 통계국).

36) 심천시 통계국>심천개황>이용외자, 2005.9.11.

37) 주해시 통계국>주해개황>대외무역, 2005.9.11.

3) 산두경제특구 외자유치현황

산두시의 2003년 외자도입 계약은 78건에 계약금액 9.92억 달러, 이 중 실행금액은 2.02억 달러이고 지난해의 실행금액과 보다 27.6% 증가했으며 이 중에 외국인 직접투자는 27.3% 증가했다.³⁸⁾ 2005년 말까지 5611여 개의 외국인 직접투자기업이 산두에 설립되고 외국인 직접투자 계약금액은 2.22억 달러이며 이 중에 실행금액은 1.06억 달러이다.³⁹⁾

〈표2-6〉 산두 외자유치 현황

(단위: 억 달러)

연 도	계약금액	성장률%	실행금액	성장률%
2001년	2.97	5.3	1.82	7.1
2002년	1.98	-33.3	1.58	-13.2
2003년	9.92	400.0	2.02	27.6
2005년	2.22	26.9	1.06	35.7

자료: <http://sttj.shantou.gov.cn>(산두시 통계국), www.shantou.gov.cn(산두시정부)

4) 하문경제특구 외자유치현황

하문시의 2002년 외자도입 계약은 380건에 계약금액 15.05억 달러, 이 중 실행금액은 11.9억 달러이고 지난해의 실행금액과 보다 3.2% 증가했다. 2002년 말까지 하문시의 외자도입 계약은 합계 5,714건에 계약금액 201.16억 달러, 이 중 실행금액은 129.71억 달러이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대만, 미국, 싱가포르, 일본 순이다. 2004년은 계약금액 10.55억 달러, 이 중 공업이용외자는 5.41억 달러이다. 2004년 실행금액은 5.7억 달러이고 지난해의 실행금액 보다 35.1%를 증가하였다.⁴⁰⁾ 2005년 말까지 외자도입 계약은 6,887건에 계약금액 231.4억 달러, 이 중 실행금액은 146.7억 달러에 달한다.

38) 산두시 통계국>통계공보.

39) 산두시정부 홈페이지>經濟建設>招商引資, 2006.2.10.

40) 하문시 통계국>年度公報, 2005.4.14.

〈표2-7〉 하문 국가별외자유치 현황

(단위: 만 달러)

국가 (지역)	歷年累計			2002년		
	건수	계약금액	실행금액	건수	계약금액	실행금액
합계	5714	2011635	1297144	380	138632	64730
홍콩	2361	941857	627852	75	35372	23675
대만	2057	419192	261955	135	25442	11845
미국	209	131445	84614	23	5183	2326
싱가포르	297	68239	44203	30	4120	2085
일본	155	42918	28173	22	2389	2373
한국	35	6214	3479	7	485	405

자료: www.stats-xm.gov.cn(하문시 통계국).

5) 해남경제특구 외자유치현황

2004년 말에 해남성의 외자도입 계약은 171건에 계약금액은 7.43억 달러, 이 중 실행금액은 6.70억 달러이다. 그 중에 국외차관은 0.27억 달러이고 그 전해보다 28.5% 감소했다. 외국인 직접투자는 6.43억 달러이고 그 전해보다 10.8% 증가했다.41) 2005년 9월 외국인 직접투자액은 1.06억 달러이고 작년과 보다 242.6% 상승하였다. 전년 외자 실행금액이 7.07억 달러이고 전년도보다 5.5% 상승하였다. 이중에 외국인직접투자는 6.84억 달러이고 6.3% 상승하였다.

〈표2-8〉 해남 외자유치 현황

구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투자계약(건)	187	238	171	171	174
대외차관	3	5	7	2	-
외국인직접투자	184	233	164	169	-
계약금액(만 달러)	15940	25063	34575	74335	34194
대외차관	2235	1990	5390	4050	-
외국인직접투자	13705	23073	29185	70285	-
실행금액(만 달러)	61280	99878	61782	66998	70683
대외차관	18200	48700	3720	2655	2310
외국인직접투자	43080	51178	58062	64343	68372

자료: www.hainan.gov.cn(해남성 정부).

41) 해남성 통계국 > 統計通報·公報 > 統計公報, 2005.1.27.

6) 포동경제특구 외자유치 현황

2004년 말에 포동신구의 외자도입 계약은 11,730건에 계약금액은 252.16억 달러이다. 국가별로는 홍콩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독일, 일본, 싱가포르, 미국 순이다.⁴²⁾ 2005년 1~10월 외자도입 계약은 1,376건에 계약금액은 44.48억 달러이고 전년보다 55.8% 상승하였다.

2005년 포동신구의 이용외자는 세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현대 서비스업에 이용외자가 제일 많다. 2005년에 현대 서비스업은 외자유치 금액이 전체 이용외자 금액에 63.1%를 차지했다. 둘째, 기업의 재투자금액이 신 설립한 회사에 투자금액보다 훨씬 높다. 기업에 재투자가 세 가지 특징이 보인다. ㄱ) 재투자금액이 크다. ㄴ) 서비스업 기업에 재투자가 많다. ㄷ) 재투자 방식은 외자의 투입을 기업의 주식을 인수한 것으로 바꾼다. 셋째, 하이테크 업종이 증가 된다.⁴³⁾

〈표2-9〉 포동신구 외자유치 현황

구 분	2000년	2003년	2004년
직접투자계약(건)	693	1672	1688
중외합작기업	109	175	188
중외합작기업	21	15	9
외국인독자기업	563	1479	1489
계약금액(억 달러)	28.84	28.75	32.24
중외합작기업	2.73	6.47	5.05
중외합작기업	0.47	0.12	0.56
외국인독자기업	25.63	21.19	26.08

자료: www.stats-sh.gov.cn(상해시 통계국)

42) 상해시 통계국 > 상해개황 > 포동개발, 2005.9.11.

43) 投資上海(www.investment.gov.cn), “浦東新區招商引資向現代服務傾斜”, 2006.1.1.

제3장 중국과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관련 법률과 정책

제1절 중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제 체계

1. 외국인투자법체계와 정책의 개황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은 하나의 통일된 입법형식을 채택하지 않고 각종 세부입법과 관련된 단행법률·법규들이 종합적으로 형성된 복잡한 외국인투자법 체계라고 할 수 있다.⁴⁴⁾

우선 전국인민대표대회(이하 '전인대'로 칭함)에서 제정된 헌법의 제18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중국 국내법에 있는 외국기업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경영기업은 중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들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은 중국의 법률에 따라 보호된다. 이것은 중국의 외자입법에 대한 최고법이다.

둘째, 전인대와 그의 상무위원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무원이 제정한 행정법규, 결정, 명령 그리고 국무원의 각부 및 위원회가 제정한 규칙, 조례, 잠정규정, 명령 등이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관련 법규는 우선 외자도입 기본 법규라고 할 수 있는 三資企業法(중외합자경영기업법,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외자기업법)이다. 그밖에 투자 장려와는 별도로 외자도입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업관리 법규, 즉 공상행정법규, 노동관리법규, 출자관련법규 등이 있고 이외에 외국환관리법규, 금융법규, 세법, 회계법규가 있다.⁴⁵⁾

셋째, 헌법·법률·행정법규와 충돌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는 省·直轄市の 인민대표대회 및 그의 상무위원회가 외국인투자에 관한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제출하고 허가를 얻은 후에 실행할 수 있다.⁴⁶⁾ 또한 경제

44) 김여진, “國際投資規範的新發展及中國外資法的完善問題研究”, 博士學位論文, 武漢大學, 1999, p22.

45) 허운학,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2, pp.22~27.

46) 「中華人民共和國憲法」(이하 「中國憲法」으로 칭함) 제100조.

성·자치구·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해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특구의 투자우대법규, 조세우대조치를 포함하는 기업소득세법 등은 매우 복잡하고 다각화되어 있다.⁴⁷⁾

넷째, 투자 관련 정책이다. 이런 정책이 산업의 제한과 장려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의 효력은 헌법, 법률, 행정법규, 국무원 각부·위원회의 명령과 성급 지방성법규, 성급 아래의 하급 지방성법규의 순서이다.⁴⁸⁾ 다만, 지방성법규와 부문규칙 사이에 동일 사항에 대한 규정이 불일치하고 어느 것을 적용할지 확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원이 의견을 제출하고 국무원이 지방성법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당해 지방에서는 지방성법규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결정하여야 하고, 부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인정하는 것은 전인대상무위원회에 재결을 제청하여야 한다.⁴⁹⁾ 또한 부문규칙 상호간에 및 부문규칙과 지방정부규칙 상호간에 같은 사실에 관한 규정들은 불일치가 있을 때에는 국무원이 재결한다.⁵⁰⁾

1)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제와 헌법



헌법은 외국인투자 법제체계 중에 최상위법이다. 헌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기타 경제조직·개인이 중화인민공화국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서 투자하는 것을 허락하고, 중국의 기업 또는 기타 경제조직과 각종 형식의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것을 허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¹⁾ 또한 헌법에서는 중국국경 내에서 외국기업과 기타 외국경제조직 및 중외 합자경영의 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⁵²⁾

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법규를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 제63조 제1항.

47) 비교적 큰 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수요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당해 성·자치구의 지방성법규를 저촉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성법규를 제정할 수 있으며 성·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허가를 얻은 후 시행할 수 있다. 「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 제63조 제2항; 이 법이 말하는 비교적 큰 시라 함은 성·자치구의 인민정부 소재지의 시, 경제특구 소재지의 시 및 국무원의 허가를 거친 비교적 큰 시를 가리킨다. 「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 제63조 제3항.

48) 「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 제78조 내지 제82조.

49) 동법 제86조 제2항.

50) 동법 제86조 제3항.

51) 「中國憲法」 제18조 제1항.

2)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제와 법률

이제까지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률·법규는 외자의 정의와 평가, 심사표준, 비준 절차 그리고 외자의 지분비율과 이전에 관한 三資企業法과 그의 실시세칙(또는 실시조례) 및 회사법 등 법률뿐만 아니라 기타 분야의 관련 법률·법규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런 분야는 공상행정관리·조세·노동관리⁵³⁾·외환관리⁵⁴⁾·수출입관리·상표 등을 포괄된다. 그밖에 민법·경제법·민사소송법·토지·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포함된다. 여기에서는 三資企業法을 서술하고 비교적 중요한 분야의 법률·법규를 살펴보기로 한다.

(1) 三資企業法

三資企業法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外合資經營企業法)」, 「중외합작경영기업법(中外合作經營企業法)」,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中華人民共和國外資企業法)」이라고 한다. 1979년 7월 제5기 전인대 2차 회의에서 공포되고 2001년 3월 15일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수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합자기업법’으로 칭함)은 중국이 처음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 규정한 법률이며 외국투자자가 중국국경 내에서 기업설립에 기본적 법률보장을 제공하였다. 국무원은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1983년 9월 20일 제정, 2001년 7월 22일 제3차 수정)를 채택함으로써 ‘합자기업법’ 원칙상의 규정을 더욱 구체화시켰다.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이하 ‘외자기업법’으로 칭함)이 1986년 제정되고 2000년 10월 31일 수정된다. 그의 실시조례가 1990년에 제정되고 2001년 4월 12일 수정되었다. 「중외합작경영기업법」(이하 ‘합작기업법’으로 칭함)은 1988년에 설립되고 2000년 10월 31일 수정되었다. 그의 실시세칙이 1990년에 제정되었다. 三資企業은 중국 정부의 허가를 거쳐 중국에서 제정되는 경제실체이다. 합자기업과 합작기업의 경우

52) 동법 제18조 제2항.

53) 「외국인투자기업노동관리규정(外商投資企業勞動管理規定,1994.8.11)」,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中華人民共和國勞動法,1994.7.5)」, 「중화인민공화국기업노동분쟁해결조례(中華人民共和國企業勞動爭議處理條例,1993.6.11)」

54) 「중화인민공화국외환관리잠정조례(中華人民共和國外匯管理暫行條例,1996.1.29)」, 「정하는은행에 외화의결제·매도를처리한관리장정조치(外匯指定銀行辦理結匯,售匯業務管理暫行辦法,2002.11.16)」 등

에 중의 합작자 쌍방의 공동투자, 공동경영, 공동손익의 부담으로 기업을 경영하지만 기업경영활동에 따른 위험과 손익의 분담에 있어 합자기업이 합영 쌍방의 출자비율에 따라 위험과 손익을 분담하거나 합작기업에서는 기업설립 당시 체결한 합작자간의 기업설립계약에서 약정되어 있는 분담비율에 따라 위험과 손익을 분담하여야 한다. 외자기업의 경우에 출자 자본은 전액 외국투자자에서 출자된 것이어야 한다. 三資企業法은 외자기업에 대하여 여러 면에 규정을 제정하였다.

우선, 三資企業法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보호하면서 당해 기업이 중국의 법률이나 법규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⁵⁵⁾

둘째, 三資企業法은 각 투자자의 출자비율을 규정하였다. 「합자기업법」과 「합작기업법실시세칙」에 따라 합자기업의 등록자본 중 외국합자자의 투자비율은 일반적으로 25% 이상이어야 한다.⁵⁶⁾ 다만, 「외자기업법실시세칙」에서는 “공업소유권·특허기술로 출자할 때 그 평가액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⁵⁷⁾

셋째, 출자방식을 규정하였다. 「합작기업법」에서는 “중외합작자는 현찰·현물·토지사용권·공업소유권·노하우·기타재산권으로 투자하거나 합작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합자기업법」에서는 합영기업의 각 당사자는 현금, 현물, 공업소유권 등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이 중에서 현금출자는 간단하고 편리하지만 외국인투자자는 외화로 출자한다. 관련 법률에 따라 외국 합영자가 외국통화로 출자하거나 중국의 합영자가 출자한 인민폐 자금을 외국 통화로 환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금 당일 중국인민은행 고시 기준 환율을 적용한다. 현물출자는 법률의 규정과 기업의 요구에 반드시 적용하여야 한다. 「합자기업법실시세칙」의 제24조에 따라 외국의 합영자의 출자용 기계설비 및 기타 실물자산은 반드시 합영기업의 생산에 필수되어야 한다. 상기 기계설비 및 기타 실물자산의 가격에 대한 평가는 동종의 기계설비 및 기타 실물자산의 당시 국제시장가격을 상회해서는 아니 된다. 三資企業法에서는 공업소유권과 특허기술에 대하여 규정이 있다. 「합자기업법실시조례」에 따라 외국의 합영자가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또는 특허기술은 다음 각 호 조건의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 ①기존제품의 성능, 품질을

55) 합자기업법 제2조; 합작기업법 제3조; 외자기업법 제4조.

56) 합자기업법 제4조 1항; 합작기업법 「실시세칙」 제18조 3항.

57) 외자기업법 「실시세칙」 제27조 2항

“이러한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의 평가액은 반드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가치금액과 일치해야 하며, 그 평가액 이 외자기업 등록자본의 20%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현저히 개선하고 생산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한다. ②원자재, 연료, 동력을 현저히 절약할 수 있어야 한다. 「외자기업법실시세칙」의 제27조에서는 유사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다.⁵⁸⁾

넷째,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였다.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관리자주권은 외자기업이 중국법률과 외국인투자기업의 협의·계약·정관에서 국제적인 선진의 과학방법으로 스스로 경영·관리하는 권리가 있다고 말한다. 「합자기업법실시조례」의 제5조, 「합자기업법」의 제11조와 「외자기업법」의 제11조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다섯째, 분쟁 해결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합자기업법」의 제25조에서는 “중외합작자가 합자기업 계약·정관의 이행에 분쟁은 발생할 경우에는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중외합작자가 협상 또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 미결일 경우 합자기업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된 서면중재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중외합작자가 합자기업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않고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다. 「합자기업법」⁵⁹⁾과 그의 실시조례⁶⁰⁾에서는 이와 유사한 규정이 있다.

(2) 회사법

투자와 관련된 회사법은 중국의 자국기업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외국투자기업에도 적용된다.⁶¹⁾

58) 외국투자자가 공업소유권, 특허기술로 출자할 경우 그 공업소유권, 특허기술은 반드시 외국인투자자 소유여야 한다. 출자하는 공업소유권 및 특허기술에 대해서는 소유권 증서사본, 유효성, 기술성능, 실용가치, 평가근거와 기준 등을 포함하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이 자료는 외자기업 설립신청서와 함께 허가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59) 합영 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이사회의 협의에 의한 해결이 불가능한 때에는 중국의 중재기관이 조정 또는 중재한다. 다만, 해당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기타의 중재기관이 중재할 수도 있다. 합자기업법 제15조.

60) 합영 각 당사자가 합영기업의 협정서·계약서·정관을 해석 또는 이행할 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하게 우호적인 협상 또는 조정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한다. 협상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중재 또는 사법에 의한 해결을 구한다. 동법 「실시조례」 제97조; 합영 각 당사자는 중재관련 서면협약에 따라 중국의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수도 있고, 기타 중재기관에서 중재할 수도 있다. 동법 「실시조례」 제98조; 각 당사자간에 중재의 서면협약이 없는 경우, 분쟁을 일으킨 어느 일방도 법률에 의하여 중국인민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동법 「실시조례」 제99조; 분쟁해결기간 중 분쟁사항을 제외하고는 각 당사자는 합영기업의 협정서·계약서·정관에 정한 기타의 각 항 조항을 계속 이행해야 한다. 동법 「실시조례」 제100조.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회사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조직형식이 유한책임회사여야 한다.⁶²⁾ 따라서 비유한책임회사 형태의 합작기업, 외자기업은 회사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대로 주식회사의 경우는 외국인주식회사 잠정규정상 규정이 없을 경우 회사법의 규정을 적용한다.⁶³⁾

1993년 12월에 제정되고 2005년 10월 25일에 제3차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은 13장으로 나뉘지고 총 219조이다. 주요내용은 총칙, 유한책임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유한책임회사의 주식양도, 주식회사의 설립과 조직기구, 주식회사의 주식발행과 양도, 회사의 이사·감사·고위직 관리자의 자격과 의무, 회사의 합병·분립·증자·감자·해산 및 청산 등을 규정한 것이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회사법에 따라 중국 국경 내에 설립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이다. 회사는 현대기업의 전형적인 조직형태와 중요한 시장주체이고 회사법에서 중국회사는 유한책임회사와 주식회사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한책임회사란 출자자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자산 전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주식회사는 그 자산전부가 동일 가격의 주식으로 분할되고 주주는 그 소유주식을 한도로 회사에 책임을 지고, 회사는 그 자산전부로 회사의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업법인이다. 그 밖에 회사법은 중국의 현실적인 특징을 충분히 구현하였고 유한책임회사 중 국유독자회사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규정을 두어 현재의 국유기업이 회사로 개조될 필요성에 부응하도록 하였다.⁶⁴⁾

새로운 회사법은 구 회사법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의 설립이 쉬워졌다.⁶⁵⁾ 둘째, 이사제도는 개선되었다.⁶⁶⁾ 셋째, 주주의 권리가 확대된다.⁶⁷⁾ 넷째, 1인 회사 설립이 가능해진다.⁶⁸⁾ 다섯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채권인과 회사의 이익이 보호된다.⁶⁹⁾ 여섯째, ‘집중투표제(누적투표

61) 「中國會社法」 제218조는 “외국인투자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회사법을 적용하고 외자기업의 법률 중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62) 동법 제218조.

63) “본 규정에 따라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사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제25조.

64) 문준조, 『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pp.76~77; 王家福, “WTO與中國社會主義市場法律制度建設問題”, 『中國法學』 1, 2001, p.4.

65) 「中國會社法」 제26조 및 제81조 제2항.

66) 동법 제20, 110, 112조.

67) 동법 제34, 35, 183조.

68) 동법 제59, 60조.

69) 동법 제122, 125조.

제)’가 규정·신설된다.⁷⁰⁾ 일곱째, 유한책임회사가 이익을 분배하지 않을 시 기소할 수 있다.⁷¹⁾ 여덟째, 자산평가기구의 허위자료 제공행위에 대한 배상책임의 규정이 신설되었다.⁷²⁾ 아홉째, 국유독자기업의 개혁 강화를 위한 규정이 추가되었다.⁷³⁾ 열째, 1인 회사의 직권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실시된다.⁷⁴⁾

(3) 외국인투자성회사(지주회사)

외국인투자성회사(이하 ‘투자회사’로 칭함)란 외국투자자가 중국에서 독자 혹은 합자의 방식으로 직접투자를 행하는 유한책임회사이다.⁷⁵⁾ 투자회사는 외국투자자가 중국의 관련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새로운 투자 주체이며, 그는 기업구조상 중외합자기업 혹은 독자기업이며 기업소유측면에서 보면 지주회사이다.⁷⁶⁾ 2004년 2월 12일 상무부 제2차 회의에서 수정된 「외국인투자성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關於外商投資舉辦投資性公司的規定)」은 투자성회사의 설립 요건, 경영범위, 심의, 등록자본의 출자방식, 그 설립 기업의 심의와 그 지위 및 대우, 세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제3조에 따라 투자성회사의 설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투자자의 신용이 양호하고 투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신청하기 1년 전의 투자자의 자산 총액이 4억 달러보다 낮지 않아야 한다. 또한 그 투자자는 중국국경 내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이미 설립한 적이 있고, 실제 납부한 등록자본의 출자액이 천만 달러를 초과하여야 하거나 중국 국경 내에 10개의 이상의 외국인투자기업을 이미 설립하고 실제로 납부한 등록 자본의 출자액이 3000만 달러를 초과하여야 한다. 둘째, 합자의 방식으로 투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 투자자의 신용은 양호해야 하고 투자회사를 설립할 필요가 있는 경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투자를 신청하기 1년 전의 투자자의 자산 총액은 중국 통화 1억 위안보다 높아야 한다. 셋째, 투자성회사의 등록자본은 3000만 달러보다 높아야 한다. 또한 투자회사의 설립을 신청한 외국투자자는 하나의 외국의 회사, 기업 혹은 경제조직

70) 동법 제106조.

71) 동법 제75조.

72) 동법 제208조.

73) 동법 제65조~71조.

74) 동법 제59조~64조.

75) 「외국인투자성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 제2조.

76) 李壽雙, “外商投資性公司的身分衝突及其法律應對”, 經濟法網(www.cel.cn), 2003.7.19.

이어야 하고 외국인투자자가 만일 두 명 이상이면 그 중 반드시 한명은 주식을 크게 차지한 외국인투자자로서 본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그리고 상무부의 비준을 거쳐 설립된 투자회사의 중국에서의 경영범위는 다음과 같다.⁷⁷⁾

① 중국정부가 외국인투자자의 투자를 허가하는 분야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 투자한다.

② 투자회사는 그 투자대상기업의 서면적인 위탁을 받고 이사회 의 통과를 거쳐, 투자대상기업에 네 가지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첫째, 투자대상기업을 협조하거나 대리하여 국·내외에서 당해 기업의 자체가 사용하는 기계설비·사무용설비·생산할 때 필요한 원자재·부품을 구매하고 국·내외에 투자 대상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며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외환부문 관리자의 동의와 감독 하에, 투자대상기업 사이에서 외환을 관리한다. 셋째, 투자대상기업에 제품의 생산·판매·시장 개발 과정 중의 기술지원·직원 훈련·기업 내부의 인사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넷째, 투자대상기업을 협조하고 대출금을 모색하며 보증을 제공한다.

③ 중국국경 내에서 과학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고, 신제품 및 첨단기술 연구개발하면서 그 연구·개발의 성과를 관련기업에 넘겨주고 그에 따른 기술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투자자에게 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투자자와 관련된 회사에 투자에 관한 시장정보·투자 정책 등 자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⑤ 투자회사의 본사와 관련 회사의 서비스 아웃소싱을 위한 업무를 인수한다.

(4) 기업의 인수·합병(M&A)에 관한 법규

「외국인투자자의 중국기업 M&A에 관한 잠정규정(外國投資者并購境內企業暫行規定, 2003.3.7)」(이하 'M&A 잠정규정'으로 칭함)은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주요 규정이다. 이 규정이 제정되기 전에 「민법통칙」, 「회사법」 및 「증권법」 등 몇 개의 법률만이 기업의 인수·합병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민법통칙」에서는 회사의 합병과 분립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회사법」은 「민법통칙」에서 규정한 합병원칙의 기준에 회사합병의 의결·허가·공고·권리의무의 상속을 자세히 규정하였다. 「증권법」은 상장회사의 인수·합병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M&A 잠정규정」

77) 「외국인투자성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3조에서 “본 규정의 제12조에서 규정한 주식인수협약과 국내회사증자협약은 ‘중국법률’⁷⁸⁾에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16조에서 “본 규정의 제15조에 규정한 자산구매협약은 ‘중국법률’에 적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三資企業法’ 및 그 실시세칙(또는 실시조례)의 조항 중에서 기업의 합병과 등록자본(지분)의 양도 및 등록자본의 추가에 관한 내용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국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인수·합병하는 법률이 될 수 있다. 지금은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행정법규와 기타 규범성규정은 많이 생겼다. 예를들어, 「외국인투자기업투자자지분변경약간규정(外商投資企業投資者股權變更的若干規定,1997.5.28)」, 「외상투자기업합병과분할에관한규정(關於外商投資企業合併與分立的規定,2001.11.23)」, 「외자를통한국유기업조직변경에관한잠정규정(利用外資改組國有企業暫行規定,2002.11.8)」, 「외상투자자에대한상장회사국유주와법인주의양도에관한통지(關於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2002.11.1)」 등이 있다.

「M&A잠정규정」은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국경 내에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주요법률이다. 이것은 2003년 3월 7일에 공포되었으며 같은 해 4월 12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잠정규정의 시행됨으로써 인수·합병 형식 및 인수·합병한 후의 기업관리 형식과 외국인투자법률체계의 적용에 관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였다.⁷⁹⁾ 「M&A잠정규정」은 기업인수·합병의 형식·원칙·절차·심의에 대하여 규정했고 외국인투자자가 경내 기업주주의 지분 및 증자 혹은 추가 발행한 주식을 인수하는 것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설립된 후에 중국경내 기업을 합병하고 경영하는 것 및 구매한 중국경내 기업의 자산을 투자로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하는 것 등 여러 가지 투자방식에 대한 법률근거를 제공하였다.⁸⁰⁾

사실 현실에서는 기업인수·합병 형식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M&A잠정규정」 역시 기업인수·합병에 관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었다. 법률체계를 변화하지 않기 위하여 「M&A잠정규정」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전의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 그렇다면 「M&A잠정규정」과 다른 기업의 인수합병에 관한 법규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이에 대하여 살펴보겠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지분의 변경 형식과의 관계이다. 이것은 외자인수·합병의 중요한 형식이다. 「M&A잠정규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주권의 변경에 관한 조항이 없지만 외국투자자가 주권의 변경 형식으로 경내 외국인투자기업을 인수·합병

78) ‘중국법률’은 외국인투자기업법 이외에 주로 계약법이다.

79) 叶軍, 『外資并購中國企業的法律分析』, 法律出版社, 2004, p.20.

80) 謝文捷 編: 『外資并購ABC』,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3, p.282.

하는 경우, 현행의 외국인투자기업법률, 행정법규 및 「외국인투자기업투자자지분 변경약간규정」을 적용시키고 그 중에 관련 조항이 없으면 본 규정에 의하여 한다.

둘째, 합병 형식과의 관계이다. 외국인투자자는 중국경내 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합병’의 중요성을 보이고 있다. 사실 「M&A잠정규정」에서 ‘합병’에 관한 조항이 없다. 2001년 수정된 「외상투자기업합병과분할에관한규정」(이하 ‘기업합병과 분할규정’으로 칭함)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이의 합병⁸¹⁾ 및 외국인투자기업과 내자기업 사이의 합병⁸²⁾을 규정하고 있다.

셋째,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이다.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은 주식인수합병의 한 가지이다. 「M&A잠정규정」에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다른 관련 규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인수 관리조치(上市公司收購管理辦法, 2002.9.28)」은 상장회사인수에 관한 일반적인 법이지만 외국인투자자가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는 이 규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은 네 가지 방식이 있다. ① 직접적으로 인민폐 주식(A주 혹은 국유주와 법인주)에 대한 인수·합병이다. 2002년 11월 1일에 나온 「외국투자자에대한상장회사국유주와법인주의양도문제에관한통지(關與向外商轉讓上市公司國有股和法人股有關問題的通知)」는 외국인투자자에게 주식을 양도하는 원칙과 심의 및 양도한 후에는 기업의 대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자가 이 통지와 「M&A잠정규정」에 의하여 상장회사를 인수·합병할 수 있다. 2005년 12월 31일에 공포된 「외국투자자의상장회사에대한전략적투자관리조치(外國投資者對上市公司戰略投資管理辦法)」은 외국인투자자가 A주 상장회사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원칙, 투자자의 자격, 투자전략의 여건과 절차 그리고 심사비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관리방법의 출범은 A주 상장회사에 대한 인수·합병에 대한 법률 근거를 제공하였다. ② 중국국경내 상장 외자주(B주)에 대한 인수합병이다. B주는 인민폐로 액면가를 표시하고 외화로 매매를 하며 증권거래소에 상장, 거래되는 주식이다. B주 거래는 일률적으로 인민폐로 가격이 매겨지고 결산은 외화로 하는데 환율은 결제 시 외환시장 가격으로 한다.⁸³⁾ 2001년 11월 8일에 공포된 「외국투자자와상장회사의관계에관한문제에

81) 본 규정은 중국에서 중국 법률에 따라 설립한 중외합자경영기업,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외 합작기업, 외자기업, 외국기업인투자성주식유한회사(이하 ‘회사’로 칭함) 사이의 합병. 「외상투자 기업합병과분할에관한규정」 제2조 제1항.

82) 회사는 중국 국내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관련 법률, 법규와 본 규정을 참고하고 집행한다. 동 규정 제2조 제2항.

83) 「주식회사 경내상장 외자주에 관한 규정(關與股份有限公司境內上市外資股的規定, 1995.12.25)」 제3조 제4조.

관한약간의견(關與上市公司涉及外商投資有關問題的若干意見)」에서 비상장 외자주(B주)가 B주 시장에서 유통한 것을 규정한다. 이 의견과 「M&A잠정규정」은 중국국경 내 상장 외자주(B주)에 대한 인수합병의 근거가 되었다. ③ 중국 경외 상장 외자주(H주 등)에 대한 인수합병이다. 이것은 주식의 상장지역에 제정된 법률에 적용하여야 한다.⁸⁴⁾ ④ 간접적인 인수합병이다. 즉, 인수를 실행하는 자는 대상 상장회사의 지주회사의 지분에 대한 인수를 통하여 당해 상장회사를 인수하거나 인수자는 통제된 회사에 수권하고 대상회사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상장회사를 간접적으로 인수한다.⁸⁵⁾

넷째,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의 인수합병이다. 외국인투자 주식유한회사를 인수·합병하는 조항은 「M&A잠정규정」에 없다. 1995년 1월 10일에 공포된 「외상투자주식회사에 관한잠정규정(關與設立外商投資股份有限公司若干問題的暫定規定)」에서는 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규정에 따라 외국인투자자는 국유기업과 집단소유제기업의 주식회사로 변경에 참여하면서 이런 기업에 대한 인수·합병이 완성된다.⁸⁶⁾ 또한 외국인투자자는 설립된 주식회사의 일정한 비율의 주식 혹은 추가·발행한 주식에 대한 구매를 통하여 내자주식회사를 외국인투자주식회사로 변경할 수 있다.⁸⁷⁾ 사실 이 변경이 완성될 때 외국인투자자가 중국국경 내 주식회사에 대하여 주식인수를 성사시키게 된다.

(5) 기타 중요한 법률·법규

중국의 IT산업과 BT산업도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다. 물론 현재 중국의 IT와 BT에 관한 법령은 다른 분야 법령들과 마찬가지로 많은 규정들이 있다. IT산업으로 「인터넷출판관리잠정규정」(「互聯網出版管理暫定規定」 2002.6.27), 「정보시스템공사감독관리잠정규정」(「信息系統工程監理暫定規定」 2002.12.15), 「전신업무경영허가증관리조치」(「電信業務經營許可證管理辦法」 2002.1.1), 「전신건설관리조치」(「電信建設管理辦法」 2002.2.1), 「국제통신설시건설관리규정」(「國際通信設施建設管理規程」 2002.10.1), 「국가장려한집적회로기업에 대한인증관리조치」

84) 郭雅 編:『經濟法全書』(經濟法論文第25卷), 吉林攝影出版社, 2004, p.92.

85) 郭雅, 上揭書, p.91.

86) 「외상투자주식회사에 관한잠정규정」 제18조.

87) 주식유한회사는 신청하고 외국인투자주식유한회사로 변경하는 경우에 외국인 주주는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외국환거래시장에서 대상 주식유한회사에서 구입하고 소지한 주식은 기업등록자본의 2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 동 규정 제 20조 제2항.

(「國家鼓勵的集成電路企業認定管理辦法(試行)」2005.10.21)등이 있다. BT산업으로 2002년 10월 17일 국무원이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생물검용의물건과그부속설비및기술의수출입의허가관리조례(中華人民共和國生物兩用品及相關設備和技術出口管制條例)」와 2005년 12월 31일 상무부와 해관총서가 공포한 「검용물건의항목과기술의수출입허가증관리조치(兩用物項和技術進出口許可證管理辦法)」 등이 있다.

3) 외국인투자유치 관련 법제와 地方性法規

이제까지 각 省·市·自治區 특히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수권입법을 통하여 광둥·북건·해남·천진·철강 등 성·시 및 심천·하문 등 경제특구가 제정한 地方性法規를 살펴보면 외국인투자에 관한 법규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광둥성경제특구조례(廣東省經濟特區條例, 1980.8.26)」, 「해남경제특구의상투자조례(海南經濟特區外商投資條例, 1991.3.16)」, 「주해경제특구의상투자장려에 관한 규정(珠海經濟特區關與進一步鼓勵外商投資的規定, 1990.5.2)」 그리고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장려 규정(上海市鼓勵外商投資浦東新區的若干規定, 1990.9.10)」 등의 규정을 들 수 있겠다.

「광둥성경제특구조례」에서는 외국인투자자가 경제특구 내에 기업을 설립할 때 기업의 등록과 경영사항 및 외국인투자자에게 주는 우대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조례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와 함께 노동관리 및 조직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해남경제특구의상투자조례」에서는 「광둥성경제특구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업의 설립과 등록, 투자범위, 물자의 수출입, 외화관리, 분쟁해결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 외, 「주해경제특구의상투자장려에 관한 규정」과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장려 규정」, 그리고 산두와 하문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정으로 토지·조세·금융 등에 대하여 규정해두고 있으며 「주해경제특구의상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의 제2조와 제11조 및 「산두경제특구의상투자장려에 관한 보충규정(汕頭經濟特區關與鼓勵外商投資的補充規定, 1986.12.4)」의 제5조에서는 외국인투자의 보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조세인센티브에 관한 법규

1991년 4월 9일 제7기 전인대 4차 회의에서 통과된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은 이 범주에서는 첫 번째 법률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이후 1991년 6월 30일, 국무원은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실시세칙(外商投資企業和外國企業所得稅法實施細則)」을 공포하였다. 그밖에 2003년에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中華人民共和國進出口關稅條例,2003.10.29)」, 2005년에는 제3차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2005.10.27)」와 같은 해, 수정된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실시조례(中華人民共和國個人所得稅法實施條例,2005.12.19)」등이 이 범주에 포함된다. 중국정부의 외자에 대한 우대는 기업소득세·관세·개인소득세를 포함한다. 이하에 이런 우대를 살펴보겠다(〈표 3-1〉 과 〈표 3-2〉).

1) 기업소득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30%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하고 지방소득세는 3% 부과한다.⁸⁸⁾ 다만, 경제특구, 국가 高新技術(첨단기술)산업개발구,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내에서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15%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 연해개방지역 및 각 省都(省政府 소재지)내에 설립된 기업에 대해서는 24%의 기업소득세를 부과한다.⁸⁹⁾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부문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감면은 실제 상황에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에서 정한다.⁹⁰⁾

〈표 3-1〉 외자기업소득세 우대율

지 역	제품수출기업	국가장려기업	생산성기업	비생산성기업
일반지역	15%	15%	30%	30%
경제특구	10%	15%	15%	30%
경제기술개발구	10%	15%	15%	30%
연해경제개방구역	10%	15%	24%	30%
상해포동신구	10%	15%	15%	30%
첨단기술개발구	15%	15%	30%	30%

88)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제5조.

89) 동법 제7조.

90) 동법 제9조.

지 역	제품수출기업	국가장려기업	생산성기업	비생산성기업
-----	--------	--------	-------	--------

- 주: 1) 제품수출기업: 생산액의 70% 이상 수출, 외화수지 균형기업
 2) 국가장려기업: 각종 투자장려규정에 따른 국가장려 프로젝트
 3) 생산성기업: 제조업, 에너지, 농림축어업, 건설업, 교통운수업, 생산기술서비스 등

자료: JETRO, 『중국경제 데이터 파일』, 1996.12

이상직·박기성, 『중국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2003, p.44.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1991.4.9 주석령 제45호.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1991.6.30 국무원령 제85호.

또한 감면세 정책으로서 외국인투자기업은 이익발생연도부터 2년 동안 100% 면세, 다음 3년간 기업소득세 50%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⁹¹⁾ 에너지·교통 등 중요항목의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당해 기업소재지의 성·자치구·직할시 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쳐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처음 5년간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기업소득세를 50% 감면받는다.⁹²⁾ 또한, 국무원이 확정된 국가첨단기술산업개발구에서 설립되어 하이테크기술기업으로 인정된 중외합자경영기업으로서 영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는 관할세무기관의 기준을 거쳐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처음 2년간 기업소득세를 100% 면제한다.⁹³⁾ 제품수출기업은 상술한 2년 면세, 3년 감면 혜택이 만료 후에 당해연도 수출품가치가 기업 총산품가치의 70% 이상인 경우에는 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따라 기업소득세를 50% 감면한다.⁹⁴⁾

2) 관세

1998년 1월 1일부터 국가중점발전사업에 대한 외국의 첨단기술 및 설비도입을 통한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발전 촉진을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에 대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세키로 했다.⁹⁵⁾

91) 동법 제8조.

92) 동법 제8조 제2항; 동법 실시세칙 제75조 제1항.

93) 동법 실시세칙 제75조 제6항.

94) 동법 실시세칙 제75조 제7항.

95) 「수입설비세수정책의조정에 관한국무원통지(國務院關於調整進口設備稅收政策的通知)」,

〈표 3-2〉 외국인투자 조세인센티브

세금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감면요건
국세	관세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
	기업소득세	처음 2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경영기간 10년 이상의 생산성기업
		처음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감면	경영기간 15년 이상의 에너지·교통 등 중요항목 투자기업
		채투자한 자금이 해당하 는 기납부 기업소득세의 40% 금액 환급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기업의 자본 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거 나, 5년 이상 영업할 다른 외국인투 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세	지방소득세	면제·경감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부문에서 영업 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 기업

자료: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1991.4.9 주식령 제45호.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1991.6.30 국무원령 제85호.

「수입설비세수정책의조정예관한국무원통지」, 1997.12.19.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2003.11.23 국무원령 제392호.

3) 개인소득세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제1조 “중국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외원천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중국에 주소가 없이 거주지도 없거나, 주소가 없이 1년 미만 거주지를 둔 개인은 본 법 규정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개인소득세를 납부한다.” 이법은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에게도 적용한다. 각 소득은 인민폐로 계산한다. 외화로 표시된 소득은 국가외환관리기관이 고시하는 환율에 따라 인민폐로 환산하여 세액을 계산한다.⁹⁶⁾

1997.12.19; 국무원의 관련한 규정에 따라 특정지역·특정기업 혹은 특정한 용도를 가진 출입국 물품에 대한 관세가 감소하거나 면제하고 일시적으로 감소하거나 면제하는 것을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제46조.

3. 외국인투자에 관한 정책

1) 외국인투자 자유화

투자자유화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항은 내국민대우, 최혜국대우 및 투명성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3원칙을 살펴보겠다.

첫째, 내국민대우이다. 중국은 WTO 가입 이후 기업들간의 공정경쟁을 원칙으로 하는 내국민대우의 원칙을 준수하기 위하여 우대정책으로 대표적인 조세감면 등의 조치를 개정하고 있으며, 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산업정책도 조정되고 있다.⁹⁷⁾

둘째, 최혜국대우이다. 이제까지의 중국은 투자 관련법규에서 최혜국대우를 확립하지 않았다. 다만 대외무역법에서는 중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하였던 국제조약이나 협정에 따라 호혜, 평등 원칙에 의하여 기타 당사국에 대해서는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⁹⁸⁾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중국의 최혜국대우 조약은 다섯 가지의 특징을 띤다. ①체약국 쌍방은 평등적인 국제법주체로 나타난 것이고 그 조약은 양자간 조약 형식으로 규정된다. ②체약국 쌍방은 양혜국과 수혜국이고 최혜국의 권리·의무가 평등하다. ③체약국 쌍방이 서로 최혜국대우를 해줄 때 어떤 초과의 조건을 요구하지 않는다. ④제한이 있는 최혜국대우 형식을 채택함으로써 이 조약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⑤ 최혜국대우의 예외조항은 보류한다.⁹⁹⁾

셋째, 투명성이다. WTO가입 이전의 중국정부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지적재산권 및 외국환 관리에 관한 법률법규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 공고의무, 통지의무 및 자문센터의무를 이행한 것이 시작했다.¹⁰⁰⁾ 하지만 투자에 대한 투명성은 아직도 낮다. 이를 인식한 중국정부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부 정비를 약속하였는데¹⁰¹⁾ 그 주된 내용을 보면 ①대외적으로 공포된 법률과 법규에 대해서만 집행

96)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제10조.

97) 윤기관, 전계논문, p.196.

98)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제1장 總則 제6조.

99) 梁孝玲(韓國), “中韓外國人直接投資法比較研究”, 博士學位論文, 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 2002, pp.86~87; 黃輝 編: 『WTO與國際投資法律實務』, 吉林人民出版社, 2001, p.76.

100) 詹曉寧·葛順奇, “多邊投資框架中的透明度問題”, <http://cts.nankai.edu.cn/zhuantiyantao/7.htm>

101) 김주영, 『WTO가입 앞둔 중국의 외국인투자환경 변화 추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한다. ②대외적으로 정부가 발표하는 법률과 법규는 ‘정기간행물’을 지정하여 공포한다. ③법률과 법규를 공포하기 전에 공청회 등을 통하여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④외자기업이 법률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자문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⑤중요한 법률과 법규가 반드시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시행되도록 함으로써 지방정부의 간섭을 배제한다.

2) 산업정책

중국은 일반적으로 산업의 제한과 장려를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허가를 규정한다. 중국의 외자정책은 외국인투자의 업종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국가의 경제안전, 전체경제발전 및 산업정책을 위해 외국인투자의 허가 업종을 ‘장려, 허용, 제한과 금지’ 4가지 분류하고 있다. 외자를 충분하게 이용하고 WTO가입 이후 투자지침의 합리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방향을 중국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적용하고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국 국무원은 2002년 2월 21일에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規定)」(이하 「지도규정」으로 칭함)을 공포하여 같은 해 4월 1일에 실행하였으며, 1995년 6월 20일에 공포된 「외국인투자방향지도잠정규정(指導外商投資方向暫行規定)」은 폐지하였다. 2004년 11월 30일에 국가발전과 개혁위원회와 상무부는 제3차에 개정된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資產業指導目錄)」과 그 부속서를 공포하고 2005년 1월 1일부터 실행하여, 이에 따라 2002년에 개정된 「지도목록」은 폐지되었다. 또한 외국인투자를 활발히 촉진시키기 위하여 2003년 6월 2일에 과학기술부와 상무부가 「외국인투자첨단기술장려산품목록(鼓勵外商投資高新技術產品目錄)」(이하 ‘산품목록’으로 칭함)을 공포하였다. 이 ‘산품목록’은 전자정보, 소프트웨어, 생물의학 및 의료기계, 신소재 등 11가지의 첨단기술제품을 규정하고 있다.

(1) 새롭게 공포된 「지도규정」의 주요내용

이 「지도규정」은 중국국경 내에서 투자 설립한 중외합자기업, 중외합작기업과 외자기업의 항목과 기타 형식의 외국인투자 항목에 적용된다.¹⁰²⁾ 그 주요 내용을

2001, p.9; 중국 전 대외무역경제합작부 차관이며 중국측면 WTO가입준비 협상대표인 龍永圖가 2000년 12월 홍콩에서 개최된 “2002년 중국 투자정책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임, http://business.china.com/zh_cn/topic/wto.

보면 외국인투자 업종을 ‘장려, 허가, 제한, 금지’하는 4가지로 나누고, 규정 본문에서는 ‘장려, 허가, 제한, 금지’업종만을 열거하였으며, 그 밖의 부분은 허가업종으로 간주된다(〈표3-3〉).

〈표3-3〉 외국인투자 업종

제한업종	금지업종	장려업종
①기술수준이 낙후한 업종 ②에너지절약에 불리하고 생태환경을 악화시키는 업종 ③국가가 규정한 보호성 광산 감축/채굴 업종 ④점차적으로 개방이 추진되는 업종 ⑤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업종	①국가안전 혹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치는 업종 ②환경오염, 자연자원 파괴 혹은 인체건강에 해를 끼치는 업종 ③대량의 경작지를 점유해 토지자원의 보호와 개발에 불리한 업종 ④군사장비 안전 및 효율적 이용에 불리한 업종 ⑤중국특유의 공예 혹은 기술을 이용한 생산업종 ⑥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업종	①농업 신기술과 종합개발, 에너지, 교통 및 공업용 주요 원자재 ②하이테크기술, 선진 실용기술, 제품성능 개선 및 기업 경제효율성 향상에 필요한 기술, 중국내 생산이 부족한 신설비와 신자재 ③시장수요에 근거한 우수한 제품,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업종 ④신기술, 신설비 및 에너지절약을 위한 원자재, 자원/재생자원의 종합이용, 환경오염 방지 ⑤중서부지역의 인력과 자원우위를 이용한 국가산업정책에 적합한 업종 ⑥법률/법규가 규정한 기타 업종 이외에도 ‘허가’분야 중 100% 수출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장려로 간주함

자료: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일부수정 2002.2.21 국무원령 제346호.

투자금액이 크고 회수기간이 장기인 에너지·교통·도시 기초시설에 투자할 경우에는 기존의 우대정책 외에도 승인을 거쳐 경영범위를 확대하고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생산품의 전부를 수출하는 허가업종의 외국인투자도 장려업종으로 간주하고, 수출비중이 70%이상인 제한업종의 외국인투자의 경우, 성·자치구·직할시·계획 단열시 인민정부 혹은 주관부처의 기준을 거쳐 허가업종으로 간주된다.

102)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2002. 2. 21 국무원령 제346호, 제2조.

한편, 중서부지역의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허가/제한 업종의 외국인투자의 경우는 적정 범위에서 조건이 완화된다. 이 중에서 「중서부지역의 외국인투자 장려산업 목록」에 속하는 업종은 장려업종 외국인투자 우대정책을 향유할 수 있다. 적용대상으로는 화교 투자기업과 홍콩·마카오·대만의 투자기업도 외국인 투자기업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새롭게 개정된 「지도목록」의 특징

국민경제사회의 발전과 산업구조의 조정에 잘 적응하게 하기 위하여 2002년 3월에 발표한 「지도목록」은 2년 만에 폐지되고 새로운 「지도목록」이 수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번에 수정된 「지도목록」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장려분야 소폭 축소, 제한분야 소폭 확대

이 「지도목록」은 종전과 동일하게 장려분야, 제한분야, 금지분야로 나뉘어져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도목록」은 장려분야가 257개로 5개가 줄어들었고 제한분야와 금지분야는 각각 3개, 1개가 추가되었다.

장려분야에서는 컬러디스플레이 관련 기기, 대형 순환 유도층(CFB)보일러 등 첨단기술을 요하는 분야가 추가된 반면, 지난해 긴축정책의 주된 대상 산업이었던 철강, 알루미늄 등의 분야와 오토바이 관련 분야(오토바이 완성차 제조, 주요 부품 등)가 제외되었다.

제한분야에서는 ‘대형 테마파크 건설·운영’ 등이 추가되었으며,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 영화제작’과 ‘시장조사’가 합자(작)의 조건으로 제한산업에 포함되었다. 금지산업에서는 ‘사회조사’가 추가되었다.

또한, ‘저급 광산개발 및 선광작업’의 경우 기존에는 서부지역에서 외국인 독자투자는 가능했으나 수정 후에 불가능하게 되었고, ‘자동차 주요부품 제조’에서는 자동차 부품의 모듈화와 시스템화 추세를 반영하며 세부항목들이 대폭 수정되었다.

②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 유치

이번 수정목록을 통하여 중국 정부의 외자도입의 방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예측해볼 수 있겠다.

첫째, 과잉투자 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억제이다. 이번 목록에서는 작년 긴축 대상산업이었던 제철, 알루미늄 등의 분야는 물론 폴리에스테르 생산 등도 장려분야에서 제외되었다.

둘째, 첨단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치이다. 이번 목록에서는 대형 컬러디스플레이관련 분야가 장려목록에 새로 포함되었고, 자동차 주요 부품과 자동차 전자장치, 섬유 및 화학분야 등의 분야에서도 세부 품목이 대부분 첨단기술을 요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또한, 중국이 비교적 훌륭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는 오토바이 관련 분야는 장려산업에서 삭제되었다. 이는 중국의 외자유치 방향이 중국이 기술이 부족한 첨단산업 위주로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서비스 업종에 대한 개방이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배급, 영화제작’ 등의 분야는 종전의 금지에서 제한으로 한 단계 완화되었다.

제2절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관련 특별제도



경제특구의 외국자본유치 정책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고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살펴볼 수 있겠다.

1. 경제관리권의 부여

중국의 중앙정부는 경제특구가 소속되어 있는 지방행정관청에 상당수준의 경제관리권을 부여하고 있다. 투자심사비준권은 성급(省級)에 준하고 중앙정부의 통일적 관리에 속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국가의 관련 법규·정책을 근거로 특구의 실제 상황에 맞게 민첩하게 대처하고 과감히 개혁을 모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중앙의 통일적 관리에 속하는 외교, 치안, 국방, 세수, 세관, 은행, 외환, 우편전신, 철로, 항만, 공항 등에 대해서는 국무원의 주관부문이 특구의 특수한 상황에 근거해 특수한 관리방법을 제정하고 국무원 비준한 후에 실시하였다.¹⁰³⁾

103) 이상직·박기성, 전계서, p.43.

2. 조세의 특혜

첫째, 제조업분야에 대한 조세특혜이다. 경제특구에 있는 기업으로서 투자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제조업분야의 외자기업에게는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처음 2년간 기업소득세의 전액이 면제되고, 그 다음 3년간 50%의 기업소득세만 징수한다. 또한 기업소득세의 면제 및 감면기간이 끝난 수출기업에는 다시 인·허가절차를 통하여 기업소득세의 10%를 감면하고 주고, 하이테크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는 인·허가절차를 통하여 3년을 더 연장하여 50%의 기업소득세를 감면해준다.

둘째, 비제조업분야에 대한 조세특혜이다. 특구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투자액이 5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서비스업종의 외자기업으로, 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의 기업이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처음 1년간 전액면세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¹⁰⁴⁾ 경제특구에 설립한 외자은행·외자은행지점·중외합자은행 등 금융기구는 외국인이 투자한 자본 또는 본점에서 온 지점의 운영자본이 1,000만 달러를 초과하고 그 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의 기업이며 당해 기업이 있는 지방세수기관이 허가하면 이익발생연도로부터 처음 1년간 전액면세하고, 그 다음 2년간은 50%의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¹⁰⁵⁾

셋째, 수출주도형 기업에 대한 조세특혜이다. 수출주도형 기업으로서, 수입원자재를 사용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게는 일률적으로 관세·상품세·부가가치세를 면제하며 주고, 중국산원자재를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전액의 세금을 면제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¹⁰⁶⁾

넷째, 기타 면세정책이다. 경제특구에 있는 기업이 수입하는 특구건설용 기계설비나 부품, 원자재, 연료 및 화물차량·관광용품·요식업용 식품재료 등에 대해서는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무용품이나 차량 등에 대해서도 면세수입이 허용된다.¹⁰⁷⁾

다섯째, 재투자자의 특혜이다.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이익을 본 기업 혹은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새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재투자하고,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투자부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의 40%를 되돌려주고, 제품수출기업 혹은

104)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제75조 제4항.

105) 동 실시세칙 제75조 제5항.

106) 그러나 극히 일부의 상품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107) 그러나 면세로 수입한 물건을 경제특구 밖의 국내지역으로 이동시킬 경우에는 관세를 소급하여 납부해야 한다.

첨단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대하며 그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그 재투자 부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해 준다.108)

〈표 3-4〉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특혜

세금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감면요건
기업소득세 (기본세율: 15%)	처음 2년간 100% 그 다음 3년간 50% 감면	경영기간 10년 이상의 생산성기업
	상기감면기간 만료 후에 10%세율로 기업소득세를 징수	당해연도 수출품가치가 당해연도 기업 총생산품가치의 70% 이상의 제품수출기업
	처음 1년간 100% 그 다음 2년간 50% 감면	특구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투자액 500만 달러이상, 경영기간 10년 이상으로의 서비스업종의 외국인투자기업
	처음 5년간 100% 그 다음 5년간 50% 감면	특구세무기관의 허가를 거쳐 경영기간 15년 이상 경제특구에 설립된 비행장, 항만, 부두 등 기초설시항목에 종사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재투자한 자금에 해당하는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의 40% 금액 환급 (제품수출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대설립하며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의 경우 이미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	기업에서 얻은 이익을 기업의 자본을 증가시키는데 직접 재투자하거나, 5년 이상 영업할 다른 외국인투자기업의 설립 자본금으로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소득세 (기본세율: 3%)	면제·경감	국가가 장려하는 산업부문에서 영업하거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투자기업
관세	면제	외국인 투자기업 및 국가발전 장려 국내기업이 수입하는 설비

자료: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1991.4.9 주석령 제45호.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실시세칙」, 1991.6.30 국무원령 제85호.

「수입설비세수정책의조정에관한국무원통지」, 1997.12.19.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2003.11.23 국무원령 제392호.

108)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 장려 규정」 제9조;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 제36조.

3. 고용 및 임금 등 제도의 특혜

노동자의 고용에 대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선택범위는 비교적 넓다. 특구 내 기업들은 중국 직원과 종업원을 고용하거나, 현지 인력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은 경우, 혹은 특구관리위원회 동의하에 기업 자신이 채용한 경우, 직원과 종업원들은 근로계약을 작성하여야 한다.¹⁰⁹⁾ 외국인투자기업은 경영상의 필요에 따라 기구 설립과 인원배치를 스스로 확정할 수 있다.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원은 특구 내에서 모집할 수 있으며, 특구의 노동인사 부문의 허가를 받은 후 특구이외에서 모집할 수 있다. 그리고 임용된 직원은 원래 직장으로부터 이동을 허가받을 수 있다.¹¹⁰⁾

또한 외국인투자 기업은 임금지급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특구 내 기업 중 중국 근로자들의 임금 수준, 임금형식, 포상금 지급 그리고 고용보험, 근로자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 지급 등은 경제특구 관리 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하여 기업과 근로자 사이의 계약을 체결한다.¹¹¹⁾ 외국인투자기업의 직원의 임금 표준, 임금형식, 장려금, 수당 등 제도는 기업이 스스로 확정한다.¹¹²⁾

4. 금융 및 외환관리상의 특혜

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의 특구지점이나 특구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외환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 특구에서의 외환거래 편의를 위해서 1985년, 심천에 외환거래센터가 설립되었고 1986년 11월에는 주해에, 그리고 1987년 1월에는 하문에 같은 센터가 각기 설립되어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외환거래의 활성화를 위해서 1986년 11월에는 환율의 변동폭을 두어 환율시세를 제한하던 조치가 철폐되기도 하였다.

중국의 인민폐는 1987년 6월 중국 인민은행이 「경제특구 외자은행 중외합자은행 업무관리에 관한 잠정규정(關與經濟特區外資銀行, 中外合資銀行業務管理的若干暫行規定)」을 공포하기 전에는 외국은행이나 기업에 의해서 보유되거나 사용될 수 없었고 오직 인민폐를 대신하기 위하여 중국은행이 발행한 외환권의 보유와 사용

109) 「광둥성경제특구조례」 제19조.

110)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 장려 규정」 제23조.

111) 「광둥성경제특구조례」 제21조.

112)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 장려 규정」 제24조.

만이 인정되었다. 이제 경제특구내의 모든 외국인 투자은행의 지정이나 중국과 외국의 공동투자은행(중외합자은행)에 인민폐로 예금할 수 있고 이런 은행은 중국의 국영기업, 집단기업 및 기타 승인된 단위에 인민폐로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통해 인민폐의 불환성에서 야기되는 외국인투자 기업들의 거래상의 불편이 많이 해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특구에서 수출을 주종으로 하는 외국인 투자기업들은 중국은행을 통해서 생산 및 배분에 필요한 단기운전자금을 인민폐로 대부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

5.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분쟁해결

외국인투자 보호와 분쟁해결제도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의 중요 부분이다. 중국 경제특구의 외국인투자 보호와 분쟁해결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보호

첫째,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외국인투자자가 경제특구에서의 투자, 사들이는 자산, 공업재산권 및 취득한 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익은 국가 법률에서 보호되고 법률에 따라 이를 양도, 상속될 수 있다.¹¹³⁾ 외국인투자기업과 함께 기업을 관리하고 공장을 치안하며 적극적으로 해내고 투자자 및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한다.¹¹⁴⁾

둘째,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國有化와 收用을 하지 않는다. 일반적 상황 하에서 중국정부가 합자경영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국유화와 수용을 실행하지 않는다. 다만 특수한 상황 하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따라 합영기업에 대하여 법률 절차에 의하여 징수를 실행할 수 있고, 아울러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중국정부는 타국정부와 보호협정을 체결하고 당해 협정에 의하여 한다.¹¹⁵⁾

셋째,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앙정부와 해남성정부가 명확하게 문서로 규정한 것 외에 아무 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따로 비용을 징수할 수 없거나 비용기준을 제고할 수 없다. 그러므로 외국인투자기

113)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이하 「해남특구조례」로 칭함), 1991.3.16, 제48조.

114) 「주해경제특구외상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이하 「주해특구규정」으로 칭함), 1990.5.2, 제11조.

115) 「해남특구조례」 제49조; 「中國憲法」 제13조 제3항.

업은 이 불합리한 징수를 거부할 수 있다.¹¹⁶⁾ 기업부담을 감면하기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이 부담하는 여러 가지 행정사업성 비용을 필요하게 조절하고 엄격하게 관리한다. 비용항목 및 표준은 시정부에서 심정되고 비용허가증을 심사하고 발급한 후 효력이 발생한다. 시정부는 세금을 내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참작하고 세금을 감면시켜주거나 납부시기를 늦추어준다. 비용을 마구 받고 균등하게 할당하는 것을 결연하게 저지하도록 한다.¹¹⁷⁾

넷째, 외국인의 투자와 기타 합법적 권리가 침해될 때 중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¹¹⁸⁾

2) 투자분쟁의 해결

첫째,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각 당사자가 협정·계약·정관의 해석과 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협의 또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조정 미결일 경우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된 서면중재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않았고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¹¹⁹⁾

둘째, 외국인투자기업 사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국내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해남성지방법규에 따라 처리된다.¹²⁰⁾

6. 임시입국비자의 허용과 토지사용의 혜택

첫째, 임시입국비자의 허용이다. 중국과 외교관계가 있거나, 정부간 무역거래가 있는 국가에 주민과 화교, 그리고 홍콩·마카오·대만에 거주하는 중국의 동포가 사업상담, 과학기술교류, 친척친지방문, 관광여행 등의 목적으로 경제특구를 방문

116) 동「조례」제50조.

117) 「주해특구규정」제2조.

118) 「해남특구조례」제51조.

119) 동「조례」, 제52조.

120) 동「조례」, 제55조.

할 경우 해남특구는 15일, 심천특구는 5일, 주해특구는 3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 임시입국비자로 입국해 체류할 수 있다. 또한 외국투자자 및 기업이 초청하는 외국인 노동자 및 수행원은 복수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둘째, 토지사용의 혜택이다. 경제특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투자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 토지사용료는 한 번에 납부하거나 투자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 납부할 수 있다. 포동신구의 경우에도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와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인 토지사용권 분양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주체의 요구에 따라 이전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 분양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토지사용과 관련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안정적이다.



제4장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

제1절 한국의 외국인투자 관련법

1. 외국인투자 관련법규 개황

한국의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법령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주요한 것은 외국인투자촉진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외국인투자 및 기술도입에 관한 규정(산업자원부고시), 외국인 투자 등에 관한 조세감면규정(재정경제부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5장: 외국인투자 등에 대한 조세특례), 경제자유구역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다. 외국인투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과 관련 법령에 의하여 '외자'로서의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직접투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외국환 및 대외거래에 관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는 외국환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외국인투자기업도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내국법인이므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각 개별법상 순수 국내 법인에게 적용되는 법률의 적용을 받음은 물론, 각 개별법에 따른 인·허가를 받아야만 당해 사업의 영위가 가능하다. 따라서 외국환거래법은 물론 상법 기타 외국인 사업의 운영과 거래 활동에 대해서는 관련 국내법규가 모두 외국인기업에게도 적용된다.¹²¹⁾

2. 외국인투자촉진법의 주요내용

121) 윤진기, “한국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경남법학』 제19권, 2004, p.158.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과 편의제공을 통하여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18일 제정되었다. 이 법은 한국의 외국인투자에 관한 기본법이다. 이 법은 외국인투자의 범위, 투자 허용 유형, 투자 절차, 투자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투자의 사후관리, 기술도입계약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외국투자촉진법에서는 외국인투자제도를 외국투자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지방정부가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먼저 외국인투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인·허가제도 간소화로 신속한 투자절차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KOTRA에 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One-stop서비스 제공하고, 조세지원을 확대하며, 각종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래의 규제·관리 위주에서 입장에서 벗어나 외국인투자의 촉진·지원 중심으로 법령체계를 개편하였다.

그 다음에 지방정부가 지방세 감면,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외국인투자지역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도록 하고, 지자체의 투자유치 노력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재량을 확대하였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인정하고 있는 외국인투자의 유형은 주식 또는 지분 취득형식의 투자와 장기차관형식의 투자이다. 주식취득의 경우에는 신주·기존주식취득이 모두 가능하고, 법인 이외에 개인사업자 형태의 투자도 제한되지 않는다. 신주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법인설립 또는 기존법인의 증자하는 경우에 신주를 인수하는 형식으로,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 투자는 국내법인(외국인투자기업포함)의 기존발행 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으로 행하여지며, 이외에 합병 등에 의한 주식 등의 취득도 가능하다.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을 통한 외국인투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투자금액(2인 이상의 외국인이 함께 투자하는 경우에는 1인당 투자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당해 법인 또는 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미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 또는 기업과 임원의 파견 또는 임원을 선임할 수 있는 계약,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원자재 또는 제품을 납품하거나 구매하는 계약, 기술의 제공·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한다.¹²²⁾

장기차관 형식의 외국인투자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 및 그 모기업과 자본출자관계가¹²³⁾ 있는 기업이 당해 외국인투자기업에 5년 이상의 차관을 제공하여야 한다.¹²⁴⁾

3. 외국인투자 보호와 자유화

1) 외국인투자의 보호

외국인투자는 일반 증권투자나 채권투자과 같은 간접투자보다 투자보호수준을 강화하고 지원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송금당시 외국인투자·기술도입계약의 허가내용 또는 신고내용에 따라 외국투자자의 대외송금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외국투자자와 외국인투자기업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그 영업에 관하여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과 동일한 대우를 받는다. 조세 감면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는 외국투자자,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된다.¹²⁵⁾

2) 외국인투자의 자유화

외국인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을 받지 않고 국내에서 외국인투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국민의 보건위생 또는 환경보전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에 현저히 반하는 경우, 대한민국의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제한을 받는다.¹²⁶⁾

12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4호;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123)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2) 해외 모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
 - 가. 해외 모기업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 나. 해외 모기업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124) 동법 제2조 제1항 제4호.

125) 동법 제3조.

126) 동법 제4조.

외국인투자 제외업종(〈표4-1〉)은 외국인투자를 금지한다라기 보다는 개념상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표4-1〉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외국인투자 제외업종
- 우편업, 중앙은행, 개인·사업공제업, 연금업, 증권 및 선물거래소, 기타 금융시장관리업, 어음교환업
- 입법·사법·행정기관, 주한외국공관, 기타 국제 및 외국기관
- 경제학 연구개발업,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교육기관(유아, 초등에서 대학, 특수학교 등)
- 예술가, 종교단체, 산업·전문가·환경운동·정치·노동운동단체 등

자료: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2004.5.11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1호.

「외국인투자통합공고」, 2005.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5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경우는 대부분 외국인의 주식취득의 한도를 정하는 형태로 제한하고 있다.

외국인은 외국인투자가 금지되는 업종 및 부분적으로 허용되는 업종을 함께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없고, 외국인투자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업종을 2 이상 영위하는 기업에 투자하고자하는 경우 외국인투자허용비율이 가장 낮은 업종의 외국인투자 비율을 초과하고 투자할 수 없다.¹²⁷⁾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한업종(〈표4-2〉)이라도 외국인은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 이하인 기업에 대해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주식을 취득한 후 당해 기업의 총매출액 중 제한업종의 매출액 비율이 1%를 초과하게 된 때에는 초과하게 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에게 주식을 양도해야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의 승인을 얻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양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¹²⁸⁾

또한,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을 명확히 알리기 위하여 「외국인투자통합공고」

127)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128) 동법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이외의 다른 법령이나 고시 등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가 제한되는 업종을 매년 통합하여 공고하는 제도이다.

〈표4-2〉 외국인투자 제한업종

제한업종	외국인투자 허용기준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재배업	벼, 보리 재배를 제외하고는 허용함
육우사육	외투비율 50% 미만
연·근해어업	외투비율 50% 미만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	신문은 외투비율 30%미만, 그 외는 50% 미만
핵연료가공	원자력발전 연료의 제조·공급사업을 제외하고 허용
발전업	원자력발전 제외하고는 허용함. 단 외국인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하는 발전설비의 합계는 국내 전체 발전설비의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송전업, 배전 및 판매업	외국인이 최대주주가 아니며, 외투비율 50% 미만
육류도매	외투비율 50% 미만
내항여객, 내항화물운송	남·북한간 운송, 국내회사와 합작필수, 외투비율 50%미만
정기, 부정기 항공운송	외투비율 50% 미만
전기통신회선설비 임대, 유선전화사업 무선전화사업, 무선통신 및 기타 무선통신업, 기타 전기통신업	외투비율 49%이하(다만 한국전기통신공사(KT)는 외국인 최대주주 제한 및 1인 투자비율 15% 이하)
국내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허용 (특수은행과 농수축협 미개방)
라디오, 텔레비전방송	미개방
방송채널사용	외투비율 49%이하, 단 종합편성 및 보도프로그램 전문편성채널사용사업은 미개방
종합유선 및 기타 유선방송	외투비율 49% 이하, 단 중계유선방송은 미개방
위성방송	외투비율 33% 이하
뉴스제공	외투비율 25% 미만
방사성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 제외하고 허용

자료: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2004.5.11산업자원부고시 제2004-51호.

「외국인투자통합공고」, 2005.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54호.

「외국인투자촉진법」 제4조 제4항.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5조 제2항.

4. 외국인투자 유치제도

1) 외국인투자지역

(1) 외국인투자지역의 의의

외국인투자지역 제도는 시장·도지사가 일정한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고,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조세감면을 포함한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대규모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제도이다.¹²⁹⁾

(2)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개발

각 시장·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산업단지 또는 일반지방산업단지 중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게 전용으로 임대 또는 양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이하 ‘외국기업 전용지역’으로 칭함)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¹³⁰⁾

또한, 각 시장, 도지사는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이하 ‘외국기업 희망지역’으로 칭함)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¹³¹⁾ 이 경우에는 외국인투자지역의 지정이 고시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다음의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이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새로운 부지의 조성을 필요한 경우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개발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¹³²⁾

129) INVEST KOREA>How to do Business>투자제도>외국인투자촉진법, 2005.7.14.

130)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

131)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호.

132) 동법 제18조 제5항.

〈표4-3〉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기준

업종기준	지정기준
제조업, 산업지원서비스업·고도기술수반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000만 달러 이상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종합휴양업, 종합유원시설업, 국제회의시설	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000만 달러 이상
복합화물터미널사업, 공동집배송센터지 조성·운영사업, 항만시설 운영사업, 공항시설 운영사업, 물류산업, 사회간접자본시설 조성사업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0만 달러 이상
연구시설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 이상 - 3년 이상 연구경력의 석사학위 이상 연구전담인력의 상시 고용규모가 10인 이상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1호 내지 제4호.

외국기업 희망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에 의하여 시설을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¹³³⁾ 또한, 2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2 이상의 외국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의 합계액이 3,000만 달러 이상이고, 시설을 동일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 안이나 인접한 지역에 설치하여야 한다.¹³⁴⁾

(3)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지원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조세감면(〈표4-4〉),¹³⁵⁾ 국가산업단지에 준하여 건설비용 및 기반시설 지원,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하고 있다.¹³⁶⁾

133)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

134) 동법 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3항 제5호.

13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제2호 및 2의5.

〈표4-4〉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세감면

법인세·소득세	재산세·취득세·등록세
-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또는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 또는 3년간 100% 감면,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15년의 범위내에서 조례로 감면기간 연장 및 감면비율 상향조정 가능

주: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5년간 조세를 100% 감면한다.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은 3년간 조세를 100% 감면한다.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4항.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되면 항만·도로·용수시설·철도·통신·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을 하고,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료를 100% 면제하며¹³⁷⁾ 시설물 등의 건축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또한 수출 또는 수입에 관한 제한이 완화되며, 중소기업 고유업종 참여 제한이 없다.¹³⁸⁾

2)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및 입지지원

(1) 임대기간 및 임대요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이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¹³⁹⁾ 임대기간은 50년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고,¹⁴⁰⁾ 임대료는 당해 토지·공장 그 밖의 재산(이하 '토지등'으로 칭함)의 가액에

136)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 제2항.

13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 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제2항.

138)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9조 제1항;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9조 제1항.

139)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1항.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다.¹⁴¹⁾ 그러나 외국기업 전용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 안에 있는 토지등의 임대요율은 그 재산은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국유재산인 경우에는 재정경제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장관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정한다.¹⁴²⁾

외국인투자기업 등을 매입할 때,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과 같이 매입대금의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이자는 연 4% 이내에서 지불한다. 첫째, 국가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의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¹⁴³⁾

(2) 임대료 감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고용증대 등 국민경제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이 공장시설 또는 사업장을 설치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가소유의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다음의 감면비율 범위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¹⁴⁴⁾ 또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산업구조의 조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등에 상당한 기여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도 75% 이내에서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¹⁴⁵⁾ 한편, 지방자치단체 소유 토지등의 감면기준과 감면비율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다.¹⁴⁶⁾

<표4-5>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비율

대상 토지등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비율
외국인투자지역에 해당하는 토지등	- 외국기업 희망지역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 달러 이상으로서	100%이내

140) 동법 제13조 제2항.

141)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142)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 2호.

143)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144) 동법 제13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145)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4항 제1호 나목.

146) 동법 제13조 제8항.

대상 토지등	대상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비율
	조세감면 결정을 받은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 운영자 - 외국인투자금액이 500만 달러 이상인 제조업	75%이내
국가산업단지, 일 반지방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에 해 당하는 토지등	구별 없음	50%이내

자료: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제6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1호의 각 목, 제2호 및 제4항.

3) 조세감면제도

(1) 조세감면 대상

조세감면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대표적인 인센티브제도이다. 외국인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한다.¹⁴⁷⁾ 다만, 기존주식 등의 취득에 의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조세감면이 배제된다.¹⁴⁸⁾ 조세감면은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재정경제부 장관이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고도기술수반사업 및 산업지원서비스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 입주사업,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업체가 영위하는 제조업 및 물류업, 또는 국제물류기지 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록 사업인 물류업은 그 대상이 된다.¹⁴⁹⁾

(2) 조세감면 세부내용

147)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

148) 구체적으로, 외국의 유가증권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된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인이 소유하고 주식을 출자한 경우 조세감면 배제하며, 해외 현지 법인에 대한 대한민국 법인(또는 국민)의 직·간접 출자 비율(10%이상)에 상당하는 부분은 조세감면 배제하며, 장기차관은 감면비율 계산시 적용하는 외국인투자 비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149)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각호.

법인세·소득세는 당해 사업을 개시한 후 당해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¹⁵⁰⁾의 개시일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¹⁵¹⁾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의 감면기간과 비율은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소득세와 동일하다.¹⁵²⁾

토지·건물에 대한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¹⁵³⁾ 다만, 사업개시일전이라도 조세감면결정 이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세, 등록세는 전액면제, 재산세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¹⁵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감면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인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¹⁵⁵⁾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¹⁵⁶⁾ 다만, 사업 개시일전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일로부터 5년간은 100%, 이후 2년간은 50% 감면한다.¹⁵⁷⁾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공제기간을 15년까지 연장하거나 공제비율을 높인 경우 이에 따른다.¹⁵⁸⁾

외국인투자기업이 증자하는 경우에 당해 증자분에 대한 조세감면(관세포함)은 상기한 최초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관련조세감면규정을 준용한다.¹⁵⁹⁾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필요한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산업지원 서비스업에 대한 사업양수방식의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에는 감면기간 및 감면비율이 단축 및 축소되었다. 법인세 및 소득세는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해로부터 3년간은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하고,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는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소득세와 동일하며, 취득세·등록세·재산세·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는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한다. 다만, 조세감면결정을 받고 사업개시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 취득세·등록세는 50%, 재산세·종합토지세는 취득일로부터 3년간 50%, 이후 2년간은 30% 감면한다.¹⁶⁰⁾

150) 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15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152) 동법 제121조의2 제3항.

153)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제1호.

154) 동법 제121조의2 제5항 제2호.

155) 동법 제121조의2 제5항.

156) 동법 제121조의2 제4항 제2호.

157) 동법 제121조의2 제5항 제3호.

158) 동법 제121조의2 제5항.

159) 동법 제121조의4 제1항.

160) 동법 제121조의2 제12항의 각호.

4) 관세 감면

첫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기타 각 사업 등에 소요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인투자자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내국지급수단으로 도입하는 자본재 및 외국인투자자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출자목적물¹⁶¹⁾로 도입하는 자본재¹⁶²⁾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¹⁶³⁾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특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¹⁶⁴⁾ 둘째,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및 기타 각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본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내용에 따라 도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한다.¹⁶⁵⁾

161) “출자목적물”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가 주식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출자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7호.

- 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 또는 이의 교환으로 생기는 내국지급수단
- 나. 자본재
- 다. 이 법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으로부터 생긴 과실
- 라. 산업재산권,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적재산권 기타 이에 준하는 기술과 이의 사용에 관한 권리
- 마. 외국인이 국내에 있는 그 지점 또는 사무소를 폐쇄하여 다른 내국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외국인이 주식 등을 소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 지점·사무소 또는 법인의 청산에 따라 당해 외국인에게 분배되는 잔여재산
- 바. 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차관 기타 해외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액
- 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 아. 국내에 소재하는 부동산
-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지급수단

162) 자본재란 산업시설 (선박·차량·항공기 등을 포함)로서의 기계·기자재·시설품·기구·부분품·부속품 및 농림·수산업발전에 필요한 가축·종자·수목·어패류 기타 주무부장관이 당해 시설의 최초시운전 (시험사업을 포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원료·예비품 및 이의 도입에 따르는 운임·보험료와 시설을 하거나 조연을 하는 기술 또는 용역을 말한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 제1항 제8호.

163) 외국인은 대한민국법인(설립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영위하는 기업이 새로 이 발행하는 주식 등의 취득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내용 중 외국인투자금액·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의 주식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자 소유의 주식 등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64)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 제1항.

165) 동법 제121조의3 제2항.

5)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

대한민국국민 또는 대한민국법인이 외국인으로부터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고도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기술제공자가 받는 기술도입대가(royalty)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당해 계약에서 최초로 그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면제한다.¹⁶⁶⁾

제2절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제도

1. 경제자유구역의 개황

2002년 11월 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명칭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으로 바꾸고¹⁶⁷⁾ 경제자유구역을 지정된다. 이 법률은 2003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법률은 한국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친화적인 경영·생활여건을 조속히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이다.

1) 경제자유구역의 개념

경제자유구역은 일정구역을 지정하고 그 구역 내에서 다른 지역과 달리 일정한 경제활동 부문에 대해 예외적인 조치¹⁶⁸⁾를 허용해 주는 특별지역을 통칭한다.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전체의 개방화 및 규제완화가 현실적으로 어려울 때, 특정지역부터 이를 실시하고 그 성과를 차츰 기타 지역으로 확대시키는 하나의 차선책으로 선

166) 동법 제121조의 6 제1항.

167) 정부는 2002년 8월 경제특별법(경제특별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하기에 이르렀고, 의견수렴 등을 거쳐 10월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였다. 이후 11월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적으로 법제화가 이루어지고, 정부는 2002.12.30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공포하였다. 이상직·박기성, 전계서, p.78.

168) 예외적인 허용조치는 경제자유구역의 목적과 유형에 따라 다양하나 규제를 완화해 주거나 관세 및 조세등을 경감해 주는 형태로 나타난다.

택하는 정책방안이다. 경제자유구역은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종다양한 형태가 존재했는데 중국이 경제특구를 개방전략의 하나로 선택하여 성공한 이후 국제적인 용어로 정착되었다.¹⁶⁹⁾

2) 국제적인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전세계적으로 수백개에 달하는 경제자유구역의 유형과 설치목적은 각국의 경제 상황과 설치지역의 입지여건에 따라 크게 다르다.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의 유형을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류하고 생산중심형, 국제교역 중심형, 생산교역복합형, 지식창조형(생산교역복합형+지식네트워크)으로 분류할 수 있다(〈표4-6〉). 이러한 경제자유구역은 초기에 생산형과 국제교역중심이었으나 점진적으로 생산교역복합형 및 지식창조형으로 발전되고 있다.

(1) 생산중심형

생산중심형은 제조업 부문의 외국인투자 유치와 추구를 위한 다양한 형태의 수출가공구역(Export Processing Zone)과 자국의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외국의 첨단기술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설치한 특정공단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생산중심형 투자자유지역내에서는 수출상품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가 무관세로 수량제한 없이 수입되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혜택이 부여되며, 각종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우수하고 저렴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제공된다.

(2) 국제교역 중심형

경제자유구역내 수입품에 대해 수량제한, 관세 및 물품세 지불, 외환통제, 기타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각종 규제 등에서 면제한다.

169) 국제적으로 경제특구라고 부르는 경제지역은 13세기 독일의 함부르크와 브레멘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대가 형성되면서 시작되었고 이러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자유무역지대는 16세기에서 19세기사이에 대외무역의 확대에 편승하여 발전하였고 19세기에 들어서는 식민지 확대로 아프리카 등의 비유럽지역에서도 형성되었으나 현대적 의미의 경제특구는 제2차 대전 후 아시아와 중남미의 개도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김부찬·김여선, “경제특별구역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통상 법률』 제47호, 2002, p.2.

(3) 생산교역복합형

앞의 두 가지 유형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이고 무역, 생산 및 금융 등 경제활동에 대한 폭넓은 자유를 보장하는 지역이다.

생산교역복합형의 특징은 첫째, 수입관세 철폐 둘째, 외환자유화 셋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 최소화 넷째,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 제공 다섯째, 국제공항, 국제항 및 국제비즈니스센터 구비는 다섯 가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

(4) 지식창조형

생산교역의 복합 이외에 서비스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기술개발 거점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표4-6> 경제자유구역의 유형

구 분	내 용	국내유형
생산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렴한 생산비용 및 세제상의 혜택 등을 이점으로 기업의 생산거점을 유치 · 전통산업지역과 첨단산업지역으로 구분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외국인기업전용단지
국제교역중심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 이점, 물류인프라 등이 강점이며 기업의 물류 및 무역거점으로 활용 	관세자유지역
생산교역복합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금융기능, 생산기능, 물류 및 무역기능 등을 복합적으로 제공 	제주국제자유도시
지식창조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교역의 복합이외에 서비스기업, 연구기관, 대학 등이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개발거점까지 운영이 가능 	경제자유구역계획(안)

자료: 박재룡,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tmation』 364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 p.7.

<표4-7> 에서 보듯이 경제자유구역은 전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주요국의 경제자유구역을 분류하면 아일랜드, 멕시코의 마길라도라 등은 생산형에 속하고 네덜란드 등은 국제교역형으로, 중국 포둥은 생산교역 복합형으로, 홍콩, 싱가포르 는 지식창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특히 아일랜드, 싱가포르는 국가전체가 경제자유구역이다.

〈표4-7〉 주요국의 경제자유구역 비교

사례	장점	면적	인센티브	주관부처
멕시코 마길라도라	미국시장 인접 저렴한 노동력	국경 20km 이내 서 해안과 내륙 으로 확대	관세면제 통관 간소화	멕시코 투 자청, 지방 정부
아일랜드	유럽인접 S/W인력 풍부	아일랜드 전체 (한반도의 1/3)	외국인기업 법인세 10% (02년부터 국· 내외 모두 12.5%)	투자개발청 (IDA)
네덜란드	배후 유럽시장 물류·인프라	네덜란드 전체 (남한의 1/2)	우대조치 없음	투자진흥청 (HIDC)
중국 포둥	중국시장 잠재력 각종 특혜	533km ² (1.6억평)	법인세 15%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싱가포르	배후 동남아시아 물류·인프라	싱가포르 전체 (1.8억평)	수출관련 소득세의 90% 10년간 면제	경제개발청 (EDP)

자료: 박재룡,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CEO Infotmation』 364호, 삼성경제연구소, 2002, p.11.



3) 국내법상의 자유구역

한국 국내법상 시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과 비슷한 자유구역으로는 「국제물류기지육성을위한관세자유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관세자유지역과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유무역지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국제자유도시를 들 수 있다. 그밖에 자유구역은 아니지만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도 이 범주에서 함께 꼽을 수 있다.¹⁷⁰⁾

‘관세자유지역’이란 당해 지역에서의 물품의 반입 또는 반출 및 용역의 제공 등에 대하여 관세법·부가가치세법·특별소비세법 및 주세법 등 세법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특히 관세자유지역은 관세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 다시 말해서 관세가 부가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특징을 갖는다.

또한 ‘자유무역지역’이라 하면 대외무역법·관세법 등 관계법률에 의한 규제를

170) 오준근,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제도)의 법적 문제”, 『土地公法研究』 vol18.No.-, 2003, pp.42~43.

완화하고 자유로운 제조·유통·무역활동 등이 보장되는 지역을 말한다. 자유무역 지역에 있어서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관세가 면제되는 지역이다. 이러한 점에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자유지역과 동일하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 법이 의미하는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외국인투자지역은 ‘시·도지사’라 한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투자가가 투자를 희망하는 지역을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표4-8> 국내법상 자유구역 비교

구 분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3천만불이상 외국인법인세 7년100%, 3년50%, 지방세5년100%, 3년50%, 부가세영세율(내국인)	3천만불이상 외국인, 고도기술, 산업지원서비스에 한해 외국인투자지역과 동일	외국인투자 2천만불~1억이상 법인소득세 7년 100%, 3년 50%, 지방세 5년 100%, 3년 50%	총사업비내 외국인1천만불이상 법인소득지 방세 3년 100%, 2년 50%	대규모투자지식기반, 문화컨텐츠는 외국인투자지역, 중규모는 제주국제자유도시수준
관세부과	관세유보	관세유보	자본재3년간면제	초기자본재2년간 면제	-
준조세	-	-	교통유발부담금면제, 산업단지조성시개발부담금, 공유수면점용료, 농림지조성비 면제	관광투자시개발부담금 농림지조성비 50% 감면, 관광진흥부가금폐지	교통유발부담금면제, 개발사업승인시 각종인허가의제, 각종개발부담금, 농지조성비 감면

구 분	관세자유지역	자유무역지역	외국인투자지역	국제자유도시	경제자유구역
노동	-	-	국가 유공자 고용의무2003년까지 면제	관광투자시 교육훈련, 고용연구개발 보조금 등 지원	월차생리휴가 배제, 자유롭게 파견근로자 채용, 국가유공자의 무채용 면제
기 타	자율적 재고 관리, 반출입 신고최소화, 가공포장시설 관철차생략	임대료감면, 물품장치장소 지정제 폐지	중소기업고유 업종 참여제한, 생활환경시설 지원	국공유지 50년간 임대, 무사증입국 확대, 외국교육기관설립 및 내국인입학완화, 면세 쇼핑, 골프장 입장료 완화, 영어공용	기준공장면적률면제, 국공유지영구시설물 건축,영어공용, 외국병원약국 허용, 출입국제도완화, 외국교육기관설립, 기반시설지원, 출자총액 면제, 중소기업고유업종 참여
행정지원	원스톱서비스	원스톱서비스	외국인 투자지원센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옴부즈만사무소, 상사조정중재 기관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

경제자유구역 및 자유무역지역 등 지정 및 운영 관련 법령

2.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제도

경제자유구역법은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각종 특혜를 주고 있다. 일단 경제자유구역법에서 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무엇인지 알아보자. 외국인 투자기업이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거하여 정의된다. 즉, 외국인은 외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및 외국정부의 기관 및 국제기구를 의미한다. 이러한 외국인이 기업 주식의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총액의 10% 이상에 달할 경우, 그 기업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된다. 또한 10% 미만이라 하더라도, 임원 파견이나 선임, 원자재 또는 제품의 구매, 기술의 제공 및 도입 또는

공동 연구개발을 하는 기업은 외국인 투자 기업에 해당된다.¹⁷¹⁾

이러한 규정에 따르면 2002년 11월 현재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기업 520개 중 104개(약20%)가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만약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서의 혜택을 누리고자 하면 의도적으로 10% 정도를 외국인 소유로 하기 위해 매각하거나 명의 신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 상당수의 기업들이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이런 외국인 투자기업에게 주어지는 유치 제도들을 살펴보겠다.

1) 경영환경 지원

(1) 조세지원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에게 국세·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3년간 자본재의 수입관세를 면제한다¹⁷²⁾(〈표4-9〉). 또한 외국인근로자의 국내 근로소득에 대하여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¹⁷³⁾

〈표4-9〉 경제자유구역 국세·지방세 우대율

세금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감면요건(투자액등)
국세	관세	면제	수입 자본재
	법인세·소득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물류업: 5백만불이상 제조업: 1천만불이상 관광업: 1천만불이상
지방세	취득세·등록세· 재산세·종합토지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제1,2호, 제121조의3 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제5항 각호.

(2) 자금지원

171) 광주원, “현시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자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p.39.

172)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제1항.

173)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의2 제2항.

경제자유구역은 자금지원에 대하여 세 가지의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① 외국기업에 임대하는 부지조성,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하고 외국인편의시설설치와 소유자금을 지원하고 있다.¹⁷⁴⁾ ② 외국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납부기간(50년)을 연장한다.¹⁷⁵⁾ ③ 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설치에 대한 재정을 지원한다.¹⁷⁶⁾

(3) 경영·생활 애로사항 해소기구설치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ombudsman 사무소와 국제 상사분쟁 중재기관을 설치하고 모든 경영과 생활 중에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있다.¹⁷⁷⁾

2) 생활환경 개선 지원

외국인투자를 더욱 잘하게 유치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은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많은 정책을 제정하였다. 첫째, 공문서의 외국어 발간·접수·처리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한다.¹⁷⁸⁾ 둘째, 외국자본에 의한 외국인 전용병원·약국을 설립·허용하고 일정 기준 충족한 외국인 의사·약사의 면허를 인정한다.¹⁷⁹⁾ 셋째, 종합유선사업자에 의한 외국방송 재송신하는 채널 구성·운영할 수 있다.¹⁸⁰⁾ 넷째, 외국 학교 법인에 의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할 수 있고 외국교육기과의 부지매입, 시설 건축, 학교운영의 필요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국제 고등학교에서의 교원을 인용할 수 있다.¹⁸¹⁾ 다섯째, 1만불 범위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토록을 허용하도록 하였다.¹⁸²⁾

3) One-stop 행정지원 체제

174)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 제2항.

175) 동법 제17조 제6항.

176) 동법 제18조.

177) 동법 시행령 제29조.

178) 동법 제20조.

179) 동법 제23조.

180) 동법 제24조.

181) 동법 제22조.

182) 동법 시행령 제19조.

기초자자체와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 의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one-stop 행정처리를 시행할 수 있다. 투자상담부터 사업개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Project Manager가 지원하는 행정 서비스는 물론 기초자치 단체에서 수행하던 인·허가 업무를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통합 수행할 수 있다.

제3절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황

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배경

제주도의 국제자유도시 구상의 역사는 1960년 ‘제주도 개발연구위원회’의 주도로 ‘제주자유지대’계획을 수립하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홍콩 등과의 경쟁을 격화시키고 항구의 ‘자유화’는 국가안전도 관련부서에서의 위험요소를 가중시키며, 경제적으로도 수익도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유로 실행되지 않았다. 1964년 ‘제주도건설종합계획’과 1966년의 ‘제주도특정지역’의 지정 그리고 1967년에 제주도특정지역 건설종합계획, 1971년에는 건설부가 수립한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1972~1981)의 권역별 계획에 따라 중문관광단지의 개발이 시작되었다. 1990년에 들어와서 제주도 개발계획은 국가계획인 ‘특정지역 제주도종합개발계획’과 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으로 2원적 계획체제를 취하여 3개의 관광단지와 26개의 관광 지구를 지정하여 관광중심으로 개발하게 되었다. 1994년부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지역적 특성을 존중하는 바탕 아래 장래의 여건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책방향과 지침이 설정되고 이에 근거한 「제1차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며 2001년까지 시행된 바 있었다.¹⁸³⁾ 2002년부터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2002년부터 제주도는 바야흐로 ‘국제자유도시’로서 첫걸음을 내딛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당시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는 데 대하여 많은 논란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며 제주의 현실 및 역량이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제주개발을 위한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183) 제주도, 『제2차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2001.8, p.9.

비판적 견해도 있었다.¹⁸⁴⁾ 그래서 2003년 2월 12일에 제주도 정부는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시범도의 추진의지를 표명하였고 2005년 11월 22일에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을 국회께서 제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¹⁸⁵⁾(이하 ‘제주자치도특별법’으로 칭함)이 지난 2월 9일에 국회에서 통과되고 21일에 공포됨으로써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여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고,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¹⁸⁶⁾

2) 국제자유도시의 개념

세계는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국경의 의미가 점차 사라지고 있고, 경제적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 경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바로 ‘국제자유도시’란 개념이 대두되었다.

국제자유도시라는 사람·상품·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이를 제주국제자유도시기본계획이나 특별법에 그리고 명칭에 따라 좀 더 상세히

184) 양영철,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 제5호, 1999, pp. 91-110 참조; 김부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제,” 『제주특별자치도시대와 제주의 미래(학술세미나자료집)』 2006.3.10, p.23.

185)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 '03.02.12 대통령께서 지방자치의 시범도 추진의지 표명
 - ▶ '05. 8 일종의 연방주에 가까운 자치도 구상 천명
- '04.11.30 제주도, 특별자치도 추진계획을 마련하여 정부에 건의
- '05. 5.20 정부혁신위,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기본구상안 확정·발표
- '05.07.20 제주특별자치도 추진위원회 및 총리실 기획단 설치
- '05.10.14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정부안 확정
 - ▶ '05.11.21 국무회의 심의·의결 및 대통령 재가
- '05.11.22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안 국회 제출
 -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05.12.30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2개 법안 국회통과
 - ▶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일부개정 법률안
- '06.02.0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국회통과 → 2. 21 공포 (법률 제7849호)

186)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

정의하여 본다면, “사람 · 상품 · 자본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며 기업 활동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지원과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 하에 내 · 외국인 투자를 통한 관련 산업(관광 · 금융 · 물류)의 육성을 도모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복합형 국제도시로의 발전을 지향하는 경제자유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⁷⁾

이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자유도시는 개방된 지역을 의미한다. 우선 ‘국제’의 의미는 한 국가나 지방이 외국이나 그 지방들과 경제 · 환경 · 정치 · 문화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의미하고,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는 이러한 교류 · 협력이 아무런 제약이나 부작용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 · 제도, 그리고 문화적 수준이 일정한 국제적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거나 충족시켜나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특별법은 사람 · 상품 · 자본의 국제적 이동을 보장함으로써 국제자유도시가 ‘개방화’를 추구하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경제적으로 외국자본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특례를 보장하고, 문화적으로 외국 문화에 대한 수용으로서 외국인 학교의 자유로운 설립과 외국인 기간제교사의 임용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있고, 외국인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는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인 이동에 대해 국제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모든 분야에 대해 완벽한 개방을 이루는 것은 아니지만 장기적인 목표는 업종에 대한 자유로운 진입과 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¹⁸⁸⁾

둘째, 국제자유도시는 경제규제가 완화됨으로써 기업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는 지역이다. 국제자유도시에 있어서의 ‘자유’란 상품 · 자본 · 노동의 이동에 제한이 없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는 경제적 규제가 완화된 지역 혹은 ‘경제규제 자유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규제자유지역이란 경제운영의 기본적인 질서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극히 소수의 규제를 제외하는 규제가 철폐된 지역을 말한다.

187) 김부찬 · 김여선, 전계논문, pp.19~20.

188) 국제화보다 좀 더 포괄적이고 한 단계 높은 개념으로 세계화라는 의미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는 기존의 민족국가 개념을 초월하여 전 인류 · 전 지구적 수준에서 경쟁과 협력을 통하여 통합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나타낸다. 즉, “세계화 현상은 확대 지향적인 시장체제의 작동과 이로 인한 자원 및 인력의 이동이 발생하고, 다시 이로 인해 근대국가의 속성인 영토성과 주권이 도전 받고 그 의미가 희석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용어상 국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지만 실질적으로 세계화를 지향하는 의미라고 판단된다. 윤영관, “세계화: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계간사상』 겨울호, 1994, pp.20~22; 윤석진, “세계화 · 국제화와 경치”, 『국제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박영사, 1995, pp.137~138.

그러나 규제의 완전한 제거란 있을 수 없다고 본다면 규제자유지역이란 특정 행정 구역 내에서 경제 분야에서의 규제를 배제함으로써 민간의 창의력과 경쟁시장의 역량을 최고로 실현할 수 있도록 배려되고 있는 지역으로 그 개념을 정의 할 수 있을 것이다.¹⁸⁹⁾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제주’라는 지역에 한정적으로 국가적 지원에 의한 지역개발을 시행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지역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지역적 범위로는 제주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나, 인적범위로는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제주지역에 투자하거나 방문·거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출입국 제도, 민자유치를 위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그리고 교육제도 등과 관련하여 국내 타 지역과는 달리 제주 지역에 한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주고 있다.

넷째, 국제자유도시는 친환경적 복합형 국제도시를 지향하는 종합적 경제특별구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단기적으로는 관광산업 중심의 자유도시로부터, 중·장기적으로 국제금융·교역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유로운 상품무역, 비즈니스, 물류의 기능이 중심이 되는 물류·교역 자유도시로 발전시켜나가고 최종적으로는 자유로운 외환거래가 허용하고 국제적인 종합금융 센터 기능이 수행되는 금융복합형 친환경적 국제자유도시로 완결시킨다는 구상이 제시되고 있다.¹⁹⁰⁾ 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는 관광산업 투자유치를 위해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를 제고하는 ‘투자진흥지구’와 제조·물류 기반 확충을 위한 ‘자유무역지역’ 그리고 제주의 생물자원을 활용한 생명공학 정보통신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해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과학기술단지’제도를 도입하였다.

다섯째, 국제자유도시는 개발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과 특례가 인정되는 지역이다. 특례법은 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국가의 지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국제자유도시 추진위원회를 두고 산하에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를 설립하여 개발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다. 또는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도민 주체의 개발과 지역산업의 육

189) 김일섭, “규제자유지역의 의의 및 필요성”, 『규제자유지역개념의 제주도 적용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 pp.2~3.

190) Jones Lang LaSalle,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 6, pp.2~12; 김부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 3, 제주발전연구원, 1999, p.91.

성을 통한 주민의 복지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지사는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작성하고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입안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지역개발이라는 개념 범주이지만 국가지원 하에 이루어지는 ‘특별개발구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3)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국제자유도시의 개념에는 복합적인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광의의 복합기능 국제자유도시와 이러한 기능 중 일부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협의의 국제자유도시 개념이 있다. 광의의 복합기능 국제자유도시의 중계무역, 창고 및 보관, 각종 다국적 기업 국제기구 국제금융기관 등의 지역본부, 국제금융 활동, 서비스업무, 제조업, 연구중심지 역할, 관광, 쇼핑 등의 다양한 경제적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권역을 말한다.¹⁹¹⁾ 반면 협의의 국제자유도시 기능으로는 여기에는 다섯 개의 유형이 있다(〈표4-10〉).¹⁹²⁾

첫째, 수출자유지역이다. 개도국에서 공산품 수출촉진을 위해 기계, 설비, 원자재 등에 대한 수입관세의 면제, 통과절차의 간소화 등을 지원하는 특별 공업지역이다(예: 마산·익산 수출 자유지역, 대만의 까오슝(高雄) 수출자유지역). 외국인 전용 공단은 수출뿐만 아니라 내수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 고도기술업 중심의 외국인 투자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세제 감면 외화 차입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예: 광주, 평동, 천안 외국인 전용산업단지).

둘째, 역외금융센터이다. 은행업무에 대한 규제와 조세 등을 폐지함으로써 국제 금융업무를 의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설정한 지역으로, 비거주자간에 다른 나라 통화로 표시된 예금거래를 주로 취급한다.

셋째, 국제투자자유지역이다. 외국으로부터 사람·재화·금융·자본 등을 유치하고 경제활동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지정하는 지역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금융·연구·주거 등 복합기능을 수용하며 외국인 투자 기업활동에 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조세혜택 등이 부여된다.

넷째, 자유항이다. 자유항은 전형적으로 항만도시 전체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경제특구이다. 자유항의 본질적인 개념은 세금이 없고 상품들의 출입이동에 있어

191) 김두홍, “지역개발정책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2003, p.97.

192) 김진호, 『홍콩발전의 국제정치경제』,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pp.329~331.

서 제약이 가해지지 않는 무역도시이다. 이것은 자유무역항 내에서의 상품의 판매 및 소비까지 포함한다. 자유항은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까닭에 기업들의 입지 선정에 유연성을 제공해준다.¹⁹³⁾

다섯째, 특별조세지역이다. 개인소득 및 기업소득세의 면제 혹은 저율적용으로 금융기관을 포함하는 국제기업을 유치하는 지역이다. 금융 업무만을 취급할 경우 역외기장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가지게 되며 이의 운영을 위해서는 정치적 안정, 외환거래의 자유화, 국제수준의 변호사·회계사·전산전문가 등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표4-10〉 국제자유도시의 유형

지역형태 기능	자유항	수출자유지역	역외금융센 터	특별조세지 역	국제자유지 역
중계수송	○				○
창고 및 보관	○				○
교역 및 마케팅	○				○
지역본부					○
국제금융			○	○	○
서비스업					○
제조업		○			○
연구					○
여행	○				○
쇼핑	○				○

자료: 김진호, 『홍콩발전의 국제정치경제』,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p.330.

2.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성과 제주자치도특별법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종전의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로 칭함)로서의 새로운 법적 지위와 명칭을 가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게 된다.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 공식 출범, 외교국방사법을 제외하고 미국의 연방주 처럼 고도의 자치권을 갖게 된다. 또한 제주자치

193) 이상직·박기성, 전계서, p.13.

도가 이런 자치권을 가진 경쟁력 있는 국제자유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다.¹⁹⁴⁾

제주자치도특별법의 발효에 따라 지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법적 기반으로 시행되어 오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폐지되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될 당시에 도민들은 ‘국제자유도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구심을 가지면서도 조만간 제주도가 홍콩이나 싱가포르에 버금가는 국제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세계적인 관광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던 것이 사실이다. 이런 기대와 희망이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흡수한 형태의 제주자치도특별법이 제정됨으로써 이 법이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을 대체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보완책 내지 발전적 대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¹⁹⁵⁾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제주자치도에 획기적인 자치권을 부여하기 위하여 새로운 제도를 선도적으로 실시, 자치조직과 인사·재정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외교국방 등 국가존립 사무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의 사무를 단계적으로 제주자치도로 이양하고 특별지방행정기관도 모두 제주도로 이관할 계획을 수립한다.¹⁹⁶⁾ 그 결과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로 칭함)는 이런 권한을 주로 갖고 국제자유도시 조성 관련 사항으로서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 및 개발,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사업추진 및 발전방안,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 간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권장하고 있다.¹⁹⁷⁾ 이것은 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가 권장한 사항¹⁹⁸⁾에 비하여 범위가 대폭 확

194)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달라지는 사항』, 2006, p5.

195) 김부찬(2006), 전개논문, p.22.

196)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2조.

197) 동법 제7조.

198)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개발에 관한 사항
5.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7.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대되고 있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⁹⁹⁾ 이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 스스로 조세세율을 정할 수 있고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대하여 조세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제주자치도에 대한 지속적인 권한 이양과 범정부적인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로서 국무총리와 제주자치도가 성과목표에 대한 협약(MOU)을 체결하고 난 후 제주자치도 추진에 따른 변화와 성과를 평가하고 중앙정부의 제주자치도에 대한 관여를 매개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고 한다. 이는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주자치도 및 도지사에게 그 주도적 권한이 이양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²⁰⁰⁾

또한 제주자치도특별법은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육성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한데 이어서, 2단계로 2007년까지 필수규제를 제외한 행정규제를 전면 정비하여 본격적인 Negative System을 도입된다.²⁰¹⁾



3.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

1) 조세의 특혜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세감면 인센티브(〈표4-11〉)는 관세·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재산세가 있다.

(1) 관세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8. 그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10조 제1항.

199) 제주자치도특별법 제4조 제3항.

200) 김부찬(2006), 전개논문, p.42.

201) 제주자치도특별법 제345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업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²⁰²⁾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면제한다.²⁰³⁾

(2) 법인세·소득세

제주도에 만들어지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하는 생명공학, 정보통신산업 등에 대해 국내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보다 투자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해 투자금액에 상관없이 내·외국인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해준다.²⁰⁴⁾ 전문휴양업 등 관광관련사업에 1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는 내·외국인 투자시설을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법인세·소득세를 3년간은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한다.²⁰⁵⁾ 제주자치도특별법은 발효된 후에 투자진흥지구에서는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IT·소프트웨어, BT, 요양시설 등 추가하고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대상사업의 총사업비 요건도 500만 달러 이상으로 완화한다.²⁰⁶⁾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는 제조업, 물류업 등 항공물류 관련시설에 1천만 달러 이상 투자하는 내·외국인 투자에 대해 투자진흥지구나 첨단과학기술단지와 같은 조세감면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3) 취득세·등록세·재산세

제주자치도특별법은 발효된 후에 전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해준다. 다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0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해준다.²⁰⁷⁾

20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203) 동법 제121조의10 제1항.

204) 동법 제121조의8 제1항.

205) 동법 제121조의9 제2항.

206) 제주자치도특별법 제217조.

동법 시행령안 제34조.

207)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0조.

〈표4-11〉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세감면 인센티브

세금종류	감면기간 및 감면율	감면요건	지원 사례
관세	전액 면제(투자진흥지구에서 사업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3년간 면제)	수입 자본재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연구개발 물품	첨단과학기술단지
법인세·소득세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2006.7.1부터 투자진흥지구에서 최초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대상사업의 총사업비(첨단과학기술단지제외):1천만 불 이상, 2006.7.1부터 투자진흥지구에서 5백만 불 이상으로 완화	투자진흥지구, 자유무역지역, 첨단과학기술단지
취득세·등록세·재산세	15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	전지역
	10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 제121조의9 제2항, 제121조의11 제1항, 제121조의10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15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

「제주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제5조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추진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계획』, 2005, p.2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0조.

2) 출입국비자 면제 및 외국어서비스 제공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²⁰⁸⁾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인투자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처리하는 등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²⁰⁹⁾

208)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56조.

3) 생활환경 개선 지원과 고용 관련 제도

외국인투자를 더욱 잘하게 유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는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하여 많은 정책을 제정하였다. 도지사는 외국인학교의 설립 또는 확장과 외국인전용주거단지의 조성 그리고 외국인전용 의료시설 또는 유아원 등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설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²¹⁰⁾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법인²¹¹⁾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²¹²⁾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²¹³⁾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²¹⁴⁾ 월차유급휴가 적용배제하고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의 무고용제 배제한다.²¹⁵⁾

4) 민자유치에 대한 포상과 민자유치위원회·자문관 제도의 설립

개발사업(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에 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와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²¹⁶⁾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

209) 동법 제163조.

21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촉진 조례」(이하 '제주자치도 투자조례'로 칭함) 제19조.

211) 사회복지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 사회복지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8조 제1항.

212)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67조 제1항.

213) 1. 외국투자자가 출자한 기업과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30%이상 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의 종사자
2.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제주자치도에 설립되거나 외국의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운영된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대학의 교원 또는 종사자
3. 제주자치도에 소재지를 둔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 전용 약국의 종사자 제주자치도 투자조례 제20조의 각호.

214)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66조.

215) 동법 제168조.

216) 동법 제222조 제1항 제17호, 제225조 제1항.

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²¹⁷⁾ 민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²¹⁸⁾ 연간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을 투자 유치하는데 기여한 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투자 및 기업유치에 대한 포상금액은 민자유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며, 투자유치금액의 1천분의1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²¹⁹⁾ 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유치정책 수립 및 외국인투자유치활동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세계 각국의 주요도시별로 투자유치자문관(이하 ‘자문관’으로 칭함)을 위촉할 수 있다. 자문관은 KOTRA 해외무역관장 등 국외 기관·단체 근무자,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투자관련 전문가 또는 그밖에 대학교수, 지역한인회 간부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사 중에서 위촉하며 도지사가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또한 자문관은 지역별로 5명 내외로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또는 투자 유치 활동에 따른 실비 보상을 할 수 있다.²²⁰⁾

5)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외국인의 투자비율이 30%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외국인투자기업 대한 입지보조금, 기반시설,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등 지원근거를 규정하고 있다.²²¹⁾ 입비보조금지원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특정부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투자기업의 사업용부지로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는 투자기업이 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²²²⁾가 소유하는 토지를 정상적인 분양가(조성원가 및 거래실례 가격 등을 감안하

217) 동법 제225조 제3항.

218) 제주자치도 투자조례 제4조 제1항.

219) 동 조례 제8조의 각항.

220) 동 조례 제10조의 각항.

221) 동 조례 제16조.

222) 산업단지개발사업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는 자가 이를 시행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2.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3.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적합한 시설을 설치하여 입주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당해 산업단지개발계획에서 적합하게 산업단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보다 인하된 가액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차액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 분양가 지원액은 정상적인 분양가 차액의 3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임대료 지원액은 정상적인 임대료 차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²²³⁾ 기반시설지원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투자기업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²²⁴⁾ 고용보조금지원의 경우에는 투자기업의 제주특별자치도민 또는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의 졸업(예정)자의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조금은 상시 고용규모 20명 이상을 신규로 채용하는 경우에 20명 초과인원 1인당 월100만원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국가유공자 및 고령자를 채용하는 경우에 신규 고용인원 1인당 월100만원 이내의 금액을 6월의 기간 내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기업당 총 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²²⁵⁾ 교육훈련보조금지원의 경우에는 교육훈련 보조금은 투자기업이 제주자치도민 또는 제주자치도 소재 대학의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20명 이상 고용하기 위하여 사외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훈련기간 6월의 기간 내에서 교육훈련인원 1인당 월1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업당 총지원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²²⁶⁾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에서 시설투자비(건축비·시설장비 구입비·기반시설 설치비 등)가 300억원을 초과하거나 1일 상시 고용규모가 50인을 초과하는 투자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50억원까지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특별지원금은 투자실적에 따라 지원하되 투자비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²²⁷⁾

6) 관광사업(카지노업)에 관한 특례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산업단지의 개발을 목적으로 공동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5.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와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개발에 관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부동산신탁회사
6.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223) 제주자치도 투자조례 제11조 제1~3항.

224) 동 조례 제12조.

225) 동 조례 제13조의 각항.

226) 동 조례 제14조의 각항.

227) 동 조례 제15조.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카지노업이란 전문영업장을 갖추고 주사위·트럼프·슬러트머신 등 특정한 기구 등을 이용하여 우연의 결과에 따라 특정인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 다른 참가자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업을 말한다. 제주자치도에 카지노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투자금액이 5억 달러 이상을 가지고 있고 이 자금이 범죄수익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하면 앞에는 규정에만 의하여 카지노업 허가를 받을 수 있다.²²⁸⁾ 이 허가의 요건에 따라 내국인보다 외국인은 카지노업을 쉽게 설립할 수 있다.

7) 국·공유재산의 임대·매각의 특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이하 '입주기업'으로 칭함)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으로 칭함)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로 칭함)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²²⁹⁾ 임대기간은 50년 이내로 설정(갱신가능²³⁰⁾)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구분하여 산출하던 것을 모두 당해 토지등의 가격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한다.²³¹⁾ 토지등을 임대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²³²⁾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은 대통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²³³⁾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은 대통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

228) 제주자치도특별법 제172조 제1항.

229) 동법 제220조 제1항.

230)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동법 제220조 제2항.

231) 동법 제220조 제2항; 동법 시행령안 제37조.

232) 동법 제220조 제3항.

233) 동법 제220조 제4항.

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²³⁴⁾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등은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²³⁵⁾ 또한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용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²³⁶⁾

8) 국제선박등록특구제도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 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²³⁷⁾

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의 토지수용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로 칭함)를 조성할 수 있다.²³⁸⁾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²³⁹⁾ 사업시행자²⁴⁰⁾는 산업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 광업권·어업권·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²⁴¹⁾ 따라서 과학기술단지에는 이 국가산업단지의 토지수용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234) 동법 제220조 제5항.

235) 동법 제220조 제6항.

236) 동법 제219조 제1항.

237) 동법 제221조 제2항.

238) 동법 제216조 제1항.

239) 동법 제216조 제2항.

240) 산업단지안의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들이 산업단지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6호)을 제외한다.

24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5장 중국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비교

1. 서론

중국 경제특구의 설립목적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조금씩 변화해왔다. 당초 경제특구가 수출가공지역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초기에는 기술도입, 외화획득, 고용기회 창출 등이 그 핵심 목적이었다. 그러나 1984년부터 경제특구에 대한 의미가 점차 확대되었다. 기존의 외화획득이나 고용기회 창출만이 경제특구의 목적이 아니라 대국적·장기적 관점으로 경제특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경제특구가 전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는 고용량이나 외화가 극히 미미하였기 때문이다. 더불어 등소평도 1984년 2월에 개최한 중앙지도자들과의 간담회석상에서 경제특구의 역할을 ‘기술의 창구, 관리의 창구, 지식의 창구, 대외정책의 창구’라고 규정하였다. 즉 등소평은 ‘창구론’에서 경제특구의 목적이 종래 강조되어온 고용확대나 외화획득이라기 보다는 첨단기술의 흡수나 선진 경영관리의 학습에 두었다.

또한 관리의 창구나 대외정책의 창구라는 단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경제특구는 홍콩, 마카오 그리고 대만에 대한 주권을 회복한다는 점에 있어서도 어떤 역할을 하여야하고, 경제특구에서의 관리체제가 국내의 경제체제 개혁을 위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강조되었다. 즉, 중국은 경제특구를 거점으로 해서 첫째, 국내의 경제체제 개혁을 실현하고, 둘째, 중국을 국제경제에 결합시키고 그 과정에서 고용확대, 외화획득, 기술획득을 실현하며, 셋째, 홍콩, 마카오, 대만에 대한 정치적 문제도 동시에 해결하고자 하였다.²⁴²⁾

중국 경제특구의 눈부신 성과는 상기한 목적으로써 좋은 대외개방정책 특히 조세의 특혜를 중심으로의 외자유치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이다.

처음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홍콩이나 싱가포르와 같은 ‘복합형국제자유도시’를 발전모델로 제시하였다. 발전의 기본 목표는 제주도를 사람·상품·자본이동이 자유

242) 이상직·박기성, 전계서, p.38.

롭고 기업 활동의 편의가 최대화 보장되는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개방거점 개발 및 제주도민의 소득·복지를 향상하는 것이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이 출범된 이후,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보장하며, 행정규제의 폭넓은 완화 및 국제적 기준의 적용 등을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국가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주자치도특별법의 발효에 따라 지금까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의 법적 기반으로 시행되어 오던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폐지되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국제자유도시 조성 사업은 새로운 계기를 맞게 되는 것이다. 명실상부한 ‘자치모범 국제자유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지속적인 규제 완화를 통하여 고도의 자치권 부여와 핵심산업 육성 및 자유시장 경제모델 구축을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2. 양자(兩者)의 비교

중국 경제특구는 세계 각국으로 통하는 창구로 삼아 각종 정책상의 혜택을 중심으로 외국인투자와 세계의 첨단기술 및 과학적 관리방법을 도입하는 특별지역 개발구이다. 제주국제자유도시는 다양한 국가적 지원과 전략을 추진하는 지역으로 외국인 투자는 단지 지역 개발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에 불과한 국가지원 특별지역 개발구이다.²⁴³⁾ 양자의 외국인투자 유치제도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표 5-2〉).

1) 근거법률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제도는 주로 광둥성경제특구조례에 따라 설립하고 각 특구는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제도가 따로 있다.²⁴⁴⁾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의 근거법률은 기준에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서 오는 7월 1일에 발효된

243)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별구역의 외자도입제도의 비교검토”, 『기업법연구』 11, 한국기업법학회, 2002, p.344.

244) 해남특구: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 주해특구: 「주해경제특구외상투자장려에 관한 규정」; 산두특구: 「산두경제특구외상투자장려에 관한 보충규정」; 포동: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장려 규정」;

제주자치도특별법을 적용한다(〈표5-1〉).

〈표5-1〉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비교

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근거법률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추진기관	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
지정지역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적용대상	내·외국인	내·외국인
개발목표	관광·업무·첨단산업·물류·금융 등 복합기능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
투자특례제도적용지역	제주투자진흥지구·자유무역지역·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첨단과학기술단지
외국인투자세우대	<p>(1) 법인세·소득세·재산세 등 3년간은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p> <p>(2) 관세</p> <p>① 제주투자진흥지구와 자유무역지역에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본재 관세를 면제한다. 다만, 사업시 직접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p> <p>②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외국에서 도입하는 연구기자재에 대해서는 관세를 전액 면제한다.</p>	<p>조세감면 대상사업에 IT·소프트웨어, BT, 요양시설 등 추가 총사업비 요건도 500만불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p> <p>(1) 법인세·소득세</p> <p>투자진흥지구에 법인세·소득세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로 완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p> <p>(2) 취득세·등록세·재산세</p> <p>전역에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해준다. 다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p>

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p>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해준다.</p> <p>(3)관세 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상기업의 관세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제주투자진흥지구입주기업의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p>
임대료 등 지원	<p>(1) 국·공유토지 혹은 공장 등의 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해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사용·수익 또는 대부하거나 매각</p> <p>(2)국·공유지의 장기임대 및 임대료 인하</p> <p>(3)국·공유지 임대예 있어 첨단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임대료감면, 매각 또는 연구시설물의 설치 허가</p> <p>(4)국·공유지의 임대는 최장 50년까지로서 갱신이 가능하며 50년을 초과할 수 없음</p> <p>(5)첨단기술단지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의 토지 임대료 감면과 1년의 범위 내에서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20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 가능</p>	<p>(1)토지임대료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지구(이하 '입주기업'으로 칭함)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으로 칭함)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로 칭함)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설정(갱신 가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임대료를 종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와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구분하여 산출하던 것을 모두 당해 토지등의 가격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하도록 한다.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2)주택 지원</p>

구분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자치단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 (3)고용 관련 제도 월차유급휴가 적용배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의무고용제 배제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821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06.2.21 공포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34조,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20조.

2) 조세제도의 비교

양제도의 조세특혜는 소득세·관세 등이 있지만 중국 경제특구의 조세제도는 더욱 우대하다. 예를 들면 중국 경제특구의 경우에는 기업소득세율은 일률적으로 15%로 하고, 투자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자 생산기업에 대하여 이익발생년도 부여는 이익발생 년도부터 2년간 전액 면세, 3년간 50% 감세(2免3減)라는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였다. 제품수출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세금감면기간만료 후에도 첨단기술기업은 신청에 따라 3년간 감세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가 기업이익을 본 기업 혹은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새로 설립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재투자하고,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투자부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의 40%를 되돌려주고, 제품수출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을 설립하거나 확대설

립하며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그 재투자부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해 준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는 법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한다.²⁴⁵⁾ 제주자치도특별법이 발효된 후에 투자진흥지구에만 법인세·소득세는 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로 완화된다.²⁴⁶⁾

3) 투자보호제도와 분쟁의 해결

한국의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는 투자보호제도가 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는 투자보호의 특별 외자유치제도가 없다. 반대로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에서는 투자보호제도가 있고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제도에서는 투자보호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예를 들면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에서는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 투자보호를 규정하였다. 「주해경제특구외상투자장려에 관한 규정」에서는 제2조와 제11조 투자보호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산둥경제특구외상투자장려에 관한 보충규정」의 제5조와 「광둥성경제특구조례」의 제1조에 투자보호를 규정하였다. 그리고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제도에서는 투자분쟁의 해결제도를 규정하였다. 해남경제특구를 예로 들면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에서는 제52조와 제53조로 규정하였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 투자분쟁의 해결제도가 없다.

4) 금융과 외환제도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에 관한 법률은 “외상은 특구 내에서 설립된 중국은행이나 기타 중국의 인가 하에 설립된 은행을 통하여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관련 외환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과 “특구 내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된 기계 설비·원재료 기타 화물을 사용하도록 장려하며 이 경우 가격은 중국 同種 상품의 수출 가격에 의해 우대를 해주고 외화로 계산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였다.²⁴⁷⁾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자치도특별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없다.

245)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8 제1항, 제121조의9 제2항.

246) 제주자치도특별법 제217조.

247) 「광둥성경제특구조례」 제8조, 제17조;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 장려 규정」 제20조;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 제25~30조.

〈표5-2〉 중국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비교

구분	중국 경제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	
근거법률	광둥성 경제특구 조례 각 특구의 투자 관련 제도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 자 장려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 한 특별법
추진기관	경제특구 관리위원회 특구 공상행정관리국	포동신구관리위원회 및 포동개발지도그룹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 원회
지정지역	심천·주해·산둥·하 문·해남도	포동신구	제주특별자치도
적용대상	내·외국인	내·외국인	내·외국인
개발목표	지식·기술·관리의 도입 창구역할의 잘하 게 발휘함	무역·금융·첨단산업 중심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함
투자특례 제도적용 지역	전 지역이 해당	육가취금융무역구·외 고교개발구·금교개발 구·장강개발구	제주투자진흥지구·첨 단과학기술단지
외국인투 자조세우 대	(1) 소득세 기업소득세율은 일률 적으로 15%로 하며, 투자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자 생산기업 에 대하여는 이익발생 년도부터 2년간 전액 면세, 그 다음 3년간 50% 감세(2免3減)라는 소득세 혜택을 부여하 였다. 제품수출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세금감면기 간만료 후에도 첨단기 술기업은 신청에 따라 3년간 감세를 연장할 수 있다. (2) 관세	(1) 소득세 ①포동에 진출한 합작 제조업체는 15% 세율 이 적용된다. ②제품수출기업으로서 기업소득세 감면기간 (이익발생년도부터 2 년간 전액 면세, 그 다 음 3년간 50% 감세) 만료 후, 당해연도의 수출제품의 생산액이 전체생산액의 70%이 상에 달한 경우에는 당해연도에 한해 기업 소득세율을 10%로 감 면한다. ③첨단기술기업은 규 정에 의한 기업소득세	조세감면 대상사업에 IT ·소프트웨어, BT, 요양 시설 등 추가 총사업비 요건도 500만 불 이상으로 완화하여 수혜대상 확대 (1)법인세·소득세 투자진흥지구에 법인세 ·소득세는5년간 100%, 그 후 2년간 50%로 완 화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법 인세·소득세는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2)취득세·등록세·재 산세 전액에 외국인투자기업 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

구분	중국 경제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	
	<p>경제특구에 있는 기업이 수입하는 특구건설용 기계설비나 부품, 원자재, 연료 및 화물차량·관광용품·요식업용 식품재료 등에 대해서는 면세로 수입할 수 있다.</p>	<p>감면 기간만료 후에도 3년 연장하여 기업소득세율을 10%로 감면한다.</p> <p>④ 중국에 진출한 합작업체가 획득 이윤을 중국내에 재투자하고 합작기간이 5년을 초과할 경우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40%를 환급한다.</p> <p>(2) 관세 좌동</p>	<p>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해준다. 다만, 국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긴요한 산업지원서비스업 및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재산세는 15년간 세액의 전액을 면제해준다.</p> <p>(3) 관세</p> <p>투자진흥지구, 첨단과학기술단지에 대상기업의 관세를 전액 면제한다. 다만,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하는 장비·설비 등에 대해 3년간 관세를 면제한다.</p>
금융·외환	<p>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의 특구지점이나 특구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해 외환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p>	<p>외국인 투자자는 중국의 외국환은행인 중국은행의 특구지점이나 특구에 설립된 외국은행 지점에 계좌를 개설하여 외환의 입출금을 자유로이 할 수 있다.</p>	<p>규정 없음</p>
투자보호	<p>첫째, 합법적 권리를 보호한다. 중국법률에 의하여 외국인투자자</p>	<p>규정 없음</p>	<p>규정 없음</p>

구분	중국 경제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	
	<p>가 경제특구에 투자하고 사들이는 자산과 공업재산권 및 취득한 이윤과 기타 합법적 권리를 보호되며 그를 이전하고 상속될 수 있다. 적극적으로 외국인투자 기업을 잘해 시키고 투자자와 기업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장한다.</p> <p>둘째, 외국투자기업에 대한 國有化와 收用을 하지 않는다. 일반 상황하에서 중국정부가 합자경영기업과 외자기업에 대해 國有化와 수용을 실행하지 않는다. 단지 특수한 상황하에서는 사회공공이익의 필요에 근거하여 합영기업에 대해 법률절차에 의거하여 징수를 실행할 수 있고, 아울러 그에 상응한 보상을 한다. 중국정부는 타국정부와 보호협정을 체결하면 당해 협정에 의해 한다.</p> <p>셋째, 불합리한 비용을 징수한 것을 금지한다. 중앙정부와 해남성 정부의 규정을 제외해 아무 부문이 초과의 비</p>		

구분	중국 경제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	
	<p>용을 징수할 수 없거나 비용기준을 제고할 수 없다. 외국인투자기업은 이 불합리한 징수를 거부할 수 있다.</p> <p>넷째, 기타 권리의 확보. 외국인의 투자와 기타 합법적 권리를 침해될 때 중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p>		
투자분쟁의 해결	<p>첫째, 중외합자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각 당사자가 협정·계약·정관의 해석과 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협의 또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 미결일 경우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된 서면 중재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국법원에</p>	규정 없음	규정 없음

구분	중국 경제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	
	<p>제소할 수 있다.</p> <p>둘째, 외국인투자기업 사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국내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해남성지방법규에 따라 처리한다.</p>		
기타 특혜	<p>(1) 경제특구에 투자하고자 하는 자는 투자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토지사용권을 취득할 수 있다.</p> <p>(2) 토지사용료는 한번에 납부하거나 투자협약서의 규정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p> <p>(3) 경영항목에 따라 사용 가능하는 기한은 다르다. 공업용지: 30년/ 상업(식당 포함됨)용지: 20년/ 상품으로 파는 주택용지: 50년/ 교육, 과학기술, 의료 위생용지: 50년/ 관광사업용지: 30년/ 재배업, 목축업, 양식업용지: 20년 (1981년)</p>	<p>(1)유통업진출허용</p> <p>포동신구에 투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은 백화점, 슈퍼마켓 등의 유통업에 진출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소매권, 백화상품수입권, 구매수출권, 외환조절권 및 수입 일용품의 내수판매에 대해 관세와 소득세를 삭감하는 등의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p> <p>(2)토지관련제도</p> <p>포동신구의 경우에도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와 장기간 토지를 임대하는 방식인 토지사용권 분양의 두 가지 방식을 통하여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임대인 경우에는 임대주체의 요구에 따</p>	<p>(1)토지임대료</p> <p>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 국제지구(이하 '입주기업'으로 칭함)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토지등'으로 칭함)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로 칭함)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을 50년 이내로 설정(갱신 가능)하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또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하는 기업에 대한 국유재산인 토지등의 임대를 종전에는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과 제주투자진흥지구를 구분하여 산출하던 것을 모두 당해 토지등의 가격에 1% 이상의 요율을 곱하</p>

구분	중국 경제특구		제주국제자유도시
	5대 경제특구	상해 포동신구	
		<p>라 이전해야할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나, 토지사용권 분양의 경우에는 계약기간동안 토지사용과 관련한 아무런 제약이 없이 안정적이다.</p>	<p>여 산출하도록 한다.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p> <p>(2)주택 지원 지방자치단체가 민영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자로서 무주택자인 외국인에게 그 건설량의 10%의 범위 안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다만,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특별공급할 수 있다.</p> <p>(3)고용 관련 제도 월차유급휴가 적용배제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의무고용제 배제</p>

자료: 김부찬·김여선, “경제특별구역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통상 법률』 제47호, 2002, pp.22~23.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별구역의 외자도입제도의 비교검토”, 『기업법연구』 11, 한국기업법학회, 2002, pp.345~34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45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821호.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2006.2.21 공포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안」 제34조,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9,20조.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 1991.3.16.

「광동성경제특구조례」, 1980.8.26.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 장려 규정」, 1990.9.10.



제6장 결론

2005년까지 중국최초의 심천경제특구가 설립된지 25년이 되었다. 그 동안 중국 경제특구는 많은 성공이나 실패를 거치고 경제관리권의 부여와 조세의 우대, 금융과 외환제도, 외국인투자의 보호와 분쟁해결 제도의 설립 및 토지 관련 특혜 제공 등 일련의 효과적인 외자유치제도를 모색하고 제정하였다.

그리고 그 동안 개혁·개방의 창구와 실험장이라고 하는 중국 경제특구는 이런 제도를 통하여 자신의 경제실력을 점차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내 총생산(GDP)이 많이 증가되었다. 심천경제특구의 경우에 1980~2004년 연평균 GDP 성장률은 28%, 공업 증가치의 연평균 성장률은 40.2%, 지방재정수입의 연평균 성장률은 35.2%, 총수출액의 연평균 성장률은 37.9%를 기록하였다. 2004년 심천시의 GDP는 3,423억 위안, 1인당 GDP는 7,100 달러를 넘었고 전국도시의 순위가 5위가 되었다. 그리고 2005년 1~6월에 심천시의 GDP는 1,895억 위안으로 전년대비 14% 성장하였다.

중국 경제특구와 제주국제자유도시는 지정시점 및 양국의 경제 환경 등 여러 측면에서 요건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지만 이러한 지역이 근본적으로 외국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을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크게 다른 바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 제도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하다.

중국 경제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조세상의 혜택도 제공되고, 또한 특구 내 기업에 종사하는 화교 등의 외국인의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를 반으로 감면되었다. 기업소득세 세율은 15%로 하고 투자경영기간이 10년 이상인 외자 생산기업에 대해서는 이익발생 년도부터 2년간 전액 면세, 3년간 50% 감세(2免3減)라는 소득세 혜택을 부여되었다. 제품수출기업은 10%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고 세금감면기간만료 후에도 첨단기술기업은 신청에 따라 3년간 감세를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투자자가 기업이익을 본 기업 혹은 기타 외국인투자기업 혹은 새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에 재투자하고,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이면, 재투자부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의 40%를 되돌려주고, 제품수출기업 혹은 첨단기술기업을 설립하

거나 확대설립하며 경영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는 그 재투자부분이 납부한 기업소득세액의 전부를 반환해 준다.

중국 경제특구에는 외자유치와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특혜와 우대 정책을 실시하였다. 외국인 투자기업의 협의·계약·규정에 관한 사항은 등록신청 과정을 간단하게 하고, 신청 후 3개월 내에 처리결과가 결정되도록 입법화하였다. 출입국관리 측면에서는 특구 내 투자나 거주를 위한 외국 투자자에게는 복수비자를 발급하였다. 심천과 주해 경제특구는 1987년부터 외국인들이 5일간의 한도 내에서 무비자로 특구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이밖에도 각종 행정상의 편의를 제공하고, 외국인 투자 서비스 센터를 설치하여 투자 상담·구인·원료제공 등의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특히 지방행정 당국으로부터 무리한 경비징수를 강요받을 경우에 기업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역 또는 국가 경제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는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외자유치와 기업 경영환경의 개선을 위해 각종 세금감면과 도로·전력·수도와 같은 인프라 제공, 그리고 사회주의 국가에서 매매가 엄격하게 금지되는 토지사용권에 대해서도 양도를 허용하는 등 다방면에 특혜를 주었다.

중국정부는 특구에게 경제관리권을 부여하고 특구 정부가 투자항목에 대하여 심사·비준하는 성(省)급의 자율성을 갖고 있다. 이로써 경제특구 내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비교적 자유롭고 과감하게 시도될 수 있고, 경제특구 정부는 자율성을 가지고 외국 투자기업과 주동적으로 협상할 수 있기 때문에 외자기업 유치 등 특구 운영에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에 관한 제도에서는 금융과 외환의 관리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이런 규정 중에서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는 더욱 자세한 것이다. 이렇게 외환을 자유롭게 바꾸는 것을 실현하고 외국인 투자자는 경제특구에 투자를 하려고 한다. 많은 외국자본을 유치할 수 있다.

중국 경제특구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와 분쟁해결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하였다. 해남경제특구의 경우에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에는 1)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리, 2)외국투자기업에 대한 國有化와 收用, 3)불합리한 비용의 징수 등의 외국인투자보호 제도를 명확하게 규정되었다.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에도 “중외합작경영기업과 중외합작경영기업의 각 당사자가 협정·계약·정관의 해석과 이행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때 협의 또는 제3자의 조정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협상 또는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협상, 조정 미

결일 경우 계약의 중재조항 또는 사후에 달성된 서면중재합의에 따라 중국 중재기구 또는 기타 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각 당사자가 계약에 중재조항을 약정하지 아니하였고 사후에 서면중재합의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중국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기업 사이 또는 외국인투자기업과 중국국내기업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때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법규 및 해남성 지방법규에 따라 처리한다.”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분쟁해결제도를 규정하였다.

이상과 같이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제도에 대하여 여러 측면에서 요약 정리해 보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 경제특구의 외자유치제도가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자유치제도에 주는 시사점과 아울러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조세인센티브제도가 더욱 확충되어야 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촉진에 외자 유치가 중요한 수단이라고 한다면 무엇보다도 강화된 조세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과 제주자치도 특별법은 외자유치에 관한 조세 인센티브제도가 규정되고 있으나 중국 경제특구에 비하여 조세 인센티브제도가 부족하다. 특히 중국 경제특구는 세제의 기본세율과 외국인 재투자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 법률에서는 외국인 재투자에 대하여 규정이 없다. 따라서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 경제특구는 성급의 경제관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구 내에서는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실험이 비교적 자유롭고 과감하게 시도될 수 있었고, 경제특구 정부는 자율성을 가지고 외국 투자기업과 주동적으로 협상할 수 있었기 때문에 외자기업 유치 등 특구 운영에 보다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 외자유치문제를 포함하여 자유도시의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고도의 경제관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제주국제자유도시에 금융과 외환 관련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인센티브는 직접적인 자금제공 수단으로서 정부보조, 정부신용, 정부주식 참여, 정부보험(우대율) 등이 주요한 수단을 통하여 기업의 신규투자를 지원하거나 자본 및 영업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 특히 정부보조는 프로젝트의 자본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는 것으로 초기투자비용을 경감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정부신용은 투자기업의 자금조달을 유리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다. 또한 외국자본을 유치할 때 차관·결재·자금유통 등 대외금융관계가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외환제도를 통하여 특별환율·특별 이체-주식 전환율·외화차입에 대한 외환위험 제

거·송금에 대한 감면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도 금융과 외환 관련 인센티브제도가 있어야 한다.

넷째, 토지비축제도의 확충 등을 통하여 외국기업의 설립이 보다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 경제특구의 경우 토지 관련 특혜 제도를 보면 토지의 임대료를 규정할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권의 양도 허가 여부를 규정하였다. 하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경우에 토지의 임대료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자본을 유치하기 위하여 중국 경제특구처럼 제주국제자유도시의 토지 관련 특혜제도가 확충되어야 한다.

다섯째, 일반적으로 투자의 분쟁은 자본수출국과 자본수입국의 각 당사자가 협정·계약·정관의 해석과 이행 등에 대한 여러 가지의 분쟁을 포괄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인자본을 유치할 때 이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인 촉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중국 경제특구처럼 다양한 특혜와 조세의 우대 등 우대 정책을 제공하면서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와 분쟁의 공정한 해결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한국어문헌

1) 저서

- 김익수, 『중국투자론』, 박영사, 1999.
- 김주영, 『WTO가입 앞둔 중국의 외국인투자환경 변화 추이』,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2001.
- 김진호, 『홍콩발전의 국제정치경제』, 제주대학교출판부, 2000.
- 문준조, 『중국의 WTO가입과 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1
- 문준조, 『WTO가입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정비에 관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2.
- 박재룡, 『경제특구의 성공적 추진방안』, 삼성경제연구소, 2002.
- 박정동, 『현대중국경제론』, 법문사, 1993.
- 백권호, 『중국경제특구에 관한 연구』, 中華經濟研究院, 1985.
- 소작기著·진정미 譯: 『중국경제의 야망』, 매일경제신문사, 1996.
- 이상직·박기성, 『중국 경제특구의 성과와 성공요인』, 인천발전연구원, 2003.
- 장효상, 『국제경제법연습』, 법영사, 1997.
- 제주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 2001.8.
-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달라지는 사항』, 2006.
- 최승환, 『國際經濟法』(제2판), 법영사, 2001.
- 한국수출입은행, 『중국 투자환경과 투자사례』, 특별조사자료 2002-1, 2002.
- 허운학, 『중국투자에 필요한 중국법 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2.
- Jones Lang La Salle,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2000. 6.

2) 논문

- 강영문,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의 발전전략에 관한 연구”, 『貿易學會誌』 제29권

제3호, 2004.

곽주원, “현시기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와 경제자유구역법의 문제점”, 『경제자유구역 정책 비판』,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3.

김길수, “‘경제자유구역’은 ‘한국 속의 외국’ 이어야 한다”, 『해양한국』, 2004.

김두홍, “지역개발정책집행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대학원, 2003.

김미숙, “한국의 대중국 직접투자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2002.

김부찬,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의의 및 법·제도적 문제”, 『제주발전연구』 제3호, 제주발전연구원, 1999.

김부찬,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과 국제자유도시의 추진과제”, 『제주특별자치도시대와 제주의 미래(학술세미나자료집)』 2006.3.10.

김부찬·김여선, “경제특별구역의 개념에 관한 연구: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통상 법률』 제47호, 2002.

김부찬·송석언·김여선, “WTO가입에 따른 중국 외가도입법과 정책의 개편방향”, 『동아시아 연구논총』 Vol.11, 2001.

김여선·김부찬,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의 외자도입방안에 관한 고찰: 국제투자법의 관점에서”, 『국제법평론』 2001-II(통권 제16호), 2002.

김용석, “중국의 대외개방정책에 따른 경제특구의 의의와 그 발전”, 석사학위논문, 숭실대학 대학원, 1994.

김일섭, “규제자유지역의 의의 및 필요성”, 『규제자유지역개념의 제주도 적용방안』, 한국경제연구원, 2001.

박병원, “동북아비즈니스중심국가 실현방안”, 『경제특구와 한국경제의 미래』, 한국경제연구학회 산업연구원, 2002.

박세근, “외국인투자 산업지도목록 개정”, 『수은해외경제』 2월호, 2005.

송석언,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경제특별구역의 외자도입제도의 비교검토”, 『기업법연구』 제11집, 한국기업법학회, 2002.

양영철, “국제자유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법과 정책』 제5호, 1999.

오승렬, “중국과 북한의 ‘경제특구’정책 비교연구”, 『통일문제연구』 제7권1호(통권 제23호), 평화문제연구소, 1995.

오준근, “경제자유구역(경제특구제도)의 법적 문제”, 『土地公法研究』 vol18.No.-, 2003.

- 왕치임, “중국의 외국직접투자유치에 관한 법률과 정책”, 『경남법학』 제19권, 2004.
- 윤기관, “중국의 WTO가입 이후 외국인 직접투자전략 변화와 한국기업의 대중국투자 촉진 방안”, 『貿易學會誌』 제28권 제4호, 韓國貿易學會, 2003.
- 윤석진, “세계화 · 국제화와 경치”, 『국제화에 대한 사회과학적 이해』, 박영사, 1995.
- 윤영관, “세계화: 민족주의의 새로운 지평을 위하여”, 『계간사상』 겨울호, 1994.
- 윤진기, “한국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과 과제”, 『경남법학』 제19권, 2004.
- 이강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국제경영대학원, 2003.
- 이경재, “경제자유구역과 인천의 미래”, 『정책자료집』, 2002.
- 이상준 · 이성수, “체제전환국의 경제특구 개발과 북한 경제특구 개발에 대한 시사점 : 폴란드와 중국 경제특구 개발의 수요와 공급을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42권, 2004.
- 장진민, “중국진출 한국기업들의 투자현황과 특징분석 및 전략에 관한 연구: 산동성 진출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청주대학교대학원, 2004.
- 진의천 · 김석민, “한국기업의 대중국 투자실태와 투자전략”, 『(朝鮮大)地域發展研究』 Vol.7 No.1, 2002.
- 정길용,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신의주 경제특구 개발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중앙대 행정대학원, 2003.
- 정일, “중국과 북한투자 관련법의 국제법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대학원, 2001.

3) 기타자료

-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7678호.
-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개정 2005.12.23 법률 제7754호.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일부개정 2005.3.8 대통령령 제18736호.
- 「외국인투자및기술도입에관한규정」, 2004.5.11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4-51호.
- 「외국인투자통합공고」, 2005.2 산업자원부 공고 제2005-54호.
-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4.9.23 대통령령 18553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12.7 법률 제7715호.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 2005.3.25 대통령령 제18755호.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2006.1.2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개정 2006.2.8 대통령령 제19256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05.4.28 대통령령 제18816호.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개정 2005.8.4 법률 제7678호.
 「제주도 투자유치촉진 조례」, 2004.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공포 2006.2.21 법률 제7849호.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 제정 2006.4.5 조례 제2551호.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정 2006.4.5 조례 제2546호.

2. 중국어문헌

1) 저서



- 丁偉·林燕平 編：『經濟全球化與中國外資立法完善』, 法律出版社, 2004.
 杜新力·曹俊, 『國際投資法』, 中國政法大學出版部, 1995.
 郭雅 編：『經濟法全書』(經濟法論文第25卷), 吉林攝影出版社, 2004.
 韓彩珍, 『外商投資環境與法律環境』, 中國輕工業出版社, 2000.
 黃輝 編：『WTO與國際投資法律實務』, 吉林人民出版社, 2001.
 金芳, 『外國直接投資激勵政策』, 高等教育出版社·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9.
 宋錫祥, 『加入WTO對中國企業法的影響』, 中國經濟出版社, 2000.
 王志樂, 『韓國企業陸續向中國等國轉移』, 中國經濟出版社, 2003.
 謝文捷 編：『外資并購ABC』, 對外經濟貿易大學出版社, 2003.
 徐景和·劉淑強·張桂龍·趙雷, 『中國利用外資法律理論實務』, 人民出版社, 1998.
 叶軍, 『外資并購中國企業的法律分析』, 法律出版社, 2004.
 余勁松·周成新, 『國際投資法』, 法律出版社, 1994.
 余先予 編：『涉外經濟法從論』, 法律出版社, 2004.
 張書義 編：『中國改革開放大辭典』, 廈門大學出版社, 1994.

趙相林·曹俊 編：『外商投資法律實務』，中信出版社，2002.

趙志勇，『外商投資企業法概論』，首都經濟貿易大學出版社，2001.

2) 논문

關秀麗，“吸收外商投資政策環境”，『資本市場』 제12기, 2002.

何敏·王娟，“入世與我國仲裁制度創新”，『法學雜誌』 4, 2000.

胡景岩，“WTO加入與中國的外商投資變化”，『WTO經濟導刊』 제12기, 2002.

김여선，“國際投資規範的新發展及中國外資法的完善問題研究”，博士學位論文，武漢大學，1999.

李壽雙，“外商投資性公司的身分衝突及其法律應對”，經濟法網(www.cel.cn).

李先波，“關與我國外商投資待遇制度的回顧與展望”，『經濟法學·勞動法學』 第4期，2000.

梁孝玲(韓國)，“中韓外國人直接投資法比較研究”，博士學位論文，中國社會科學院研究生院，2002.

蘇東斌，“中國經濟特區的新鮮使命：從‘中國’經濟特區走向‘世界’經濟特區”，『特區經濟』 第12期，2001.

王家福，“WTO與中國社會主義市場法律制度建設問題”，『中國法學』 제1기, 2001.

洗國明，“國際資本流動新趨勢與我國吸收外資政策”，『2005年中國外商投資報告專論』，www.fdi.gov.cn(中國投資指南).

詹曉寧·葛順奇，“多邊投資框架中的透明度問題”，

<http://cts.nankai.edu.cn/zhuantiyantao/7.htm>

張燕生，“我國外商投資導向政策的新轉變”，『中國投資』 第4期，2002.

張玉卿·楊國華，“配合‘入世’建立中國新的外經貿法律體制(上)”，『中國法律』 제1기, 2004.

張正平，“試論經濟特區立法”，『中南民族學院學報(哲學社會科學版)』 第4期，1997.

周成新，“關與我國加入WTO後經濟特區存在和發展的法律思考”，『法商研究』 2, 2003.

3) 기타자료

「中華人民共和國憲法」, 2004년 3월 14일 제3차 수정.

「中華人民共和國立法法」, 2000.3.15 주식령 제31호.

「中華人民共和國民法通則」, 1986.4.12 주식령 제37호.

「외국인투자방향지도규정」, 일부수정 2002.2.21 국무원령 제346호.

「외국인투자산업지도목록」, 일부수정 2004.11.30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령 제24호.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일부수정 2005.10.27 주식령 제42호.

「중외합자경영기업법」, 일부수정 2001.3.15 주식령 제48호.

「중외합자경영기업법실시조례」, 일부수정 2001.7.22 국무원령 제311호.

「중외합작경영기업법」, 일부수정 2000.10.31 주식령 제40호.

「중외합작경영기업법실시세칙」, 1995.9.4 대외무역경제합작부령 제6호.

「외자기업법」, 일부수정 2000.10.31 주식령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외자기업법실시세칙」, 일부수정 2001.4.12 국무원령 제301호.

「외국인투자 장려에 관한 규정」, 1986.10.11 國發(1986) 제95호.

「中華人民共和國對外貿易法」, 일부수정 2004.4.6 주식령 제15호.

「외국인투자 주식회사의 설립에 관한 잠정규정」, 1995.1.10.

「해남경제특구외상투자조례」, 1991.3.16.

「외상투자기업과외국기업소득세법」, 1991.4.9. 주식령 제45호.

「외국인투자성회사의 설립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2004.11.17 상무부령 제22호.

「중화인민공화국수출입관세조례」, 2003.10.29. 국무원령 제392호.

「중화인민공화국개인소득세법」, 일부수정 2005.10.27. 주식령 제44호.

「상해시 포동신구 외상투자 장려 규정」, 1990.9.10 상해시인민정부령 제35호.

『國際商報』, “外商投資對中國經濟的貢獻提高”, 2005.9.29일자.

『中國經濟時報』, “如何看待外資對中國經濟的影響”, 2004.10.21일자.

『經濟日報』, “我國建立經濟特區的政策是正确的”, 1984.3.26일자.

『人民日報』, “關稅下降百姓實惠多”, 2004.12.19, 제7면.

人民罔: 深圳視窗(www.sz.people.com.cn), “深圳經濟社會發展情況介紹”, 2005.8.19